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5호)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55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57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98호)

2025. 06.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임 재 금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Ⅲ. 총괄검토 ····· 14

1. 산불 발생 및 정부대응 현황 ····· 14
2.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23
3.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29
4. 총괄 검토의견 ····· 39

Ⅳ. 조문별 검토의견 ····· 43

1. 목적 ····· 43
2. 정의 ····· 46
3. 적용범위 ····· 59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61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5
6.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등 ····· 69
7. 위원회의 구성 등 ····· 83
8.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의견제출 요청 등 ····· 88
9.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등 ····· 92
10. 지원의 원칙, 피해유형의 분류 및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102
11.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등 ····· 112
12.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등 ····· 116
13. 특별회계 설치 ····· 125
14.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지원 ····· 130
15.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 139

16.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 등 ····· 165
17.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 ····· 180
18. 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 190
19. 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 ····· 193
20. 관광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 203
21.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 지원 및 장애인 긴급돌봄 ····· 205
22.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211
23. 출입국 특례 ····· 213
24. 조세감면·납부유예 ····· 217
25.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 225
26. 심리상담・문화예술활동・치료・의료 등 지원 ····· 234
27. 근로자의 치유휴직 및 국가의 휴직비용 지원 ····· 241
28. 공동체 회복 ····· 245
29. 공동주택단지 조성 ····· 250
30.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 264
31. 추모사업 ····· 267
32.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완화 ····· 271
33. 에너지 보급 지원 ····· 273
34. 체육시설 결정 지원 ····· 276
35. 공공용 시설 설치 시 부담금 감면 ····· 278
36. 공무수행사망자 특례 인정 및 지원 ····· 282
37.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90
38.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 293
39. 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 298
40. 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 301
41. 장비·시설 등 지원 및 대응장비·인프라 확충 ····· 303
42.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 307

43. 재해예방시설 설치 ····· 311
44.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 313
45. 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 316
46.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 320
47. 산불폐기물 처리·복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323
48. 위험목 제거사업 ····· 328
49. 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 331
50.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 335
51. 산림 투자선도지구 ····· 338
52. 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근거 마련 ····· 341
53.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지역주도형 산림복원·활용 ····· 344
54.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 350
55.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 353
56. 피해지역 산림관리 권한의 위임 ····· 357
57. 증액교부금 지원 ····· 362
58.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 365
59.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 368
60. 권리의 소멸시효 ····· 381
6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385
62. 중복지원 제한 ····· 387
63. 비밀준수 등 의무 및 벌칙 ····· 390
64. 권리의 보호 ····· 393
65. 배상금·보상금 등의 환수 및 벌칙 ····· 397
66. 권한의 위임 및 시행령 위임 ····· 401

Ⅰ. 제안경위

1. 김태선의원안(2209615)

가.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5. 13

2. 박형수의원안(2209855)

가.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5. 13

3. 임미애의원안(2209957)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36인

나. 제 안 일 : 2025. 4. 18

다. 회 부 일 : 2025. 5. 13

4. 이만희의원안(2209998)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35인

나. 제 안 일 : 2025. 4. 21

다. 회 부 일 : 2025. 5. 1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태선의원안(2209615)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8,239ha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중상과 경상을 합쳐 4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택 3천여동이 불타고, 문화재 29개 소가 소실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대형산불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 지원과 건강·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란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고, 심리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재해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고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관련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배상금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하고,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안 제8조).

라. 국가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구조·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복구·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함(안 제9조).

마.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는 위원회의 지급결정 및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악화

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차.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및 주거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2. 박형수의원안(2209855)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 및 경남과 울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이는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첨단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지역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산불 대응의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전환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특별법은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존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 구제, 지역 회복,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설

치해 종합계획 수립, 피해주민 인정, 지원금 결정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개인·사업·산업·고용·공동체 피해로 유형을 구분하고, 생활·의료·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주거, 농림어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복구를 추진하며, 단순 복구를 넘는 개선형 복구와 지역 특화형 회복을 지향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기존 법정 정책사업들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바.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친환경·안전 설계를 반영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지원함(안 제28조).

아. 추모공원 및 추모비 설치 등 기념사업을 통해 주민 심리회복을 지원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인공지능(AI) 산불예측, 표준 대피매뉴얼, 대응장비 확충, 마을 산불위험지도 작성, 주민 훈련, 순찰대 제도화를 통해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차. 특별회계를 설치해 복구·재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고보

조율 상향, 세제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함(안 제23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 임미애의원안(2209957)

제안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83명, 산불영향구역 48,106ha, 주택소실 4,760여 동과 35건의 국가유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3월 21일 발생한 산불피해를 수습도 하기 전에 경상남도 하동 및 경상북도 경주 등 산불이 이어지고 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

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대형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형산불의 판정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함.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피해자 대표로 구성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급신청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함(안 제9조).

마.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통지받은 지급신청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생계·주거·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함(안 제18조).

사.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 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안 제22조).

4. 이만희의원안(2209998)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해당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보상,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국가는 초대형산불 피해 및 복구·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라.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의학적 검사·치료, 근로자 치유휴직 허용 및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마.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임업·수산업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금융부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함(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사.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아.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마을순찰대 운영,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체계를 구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자. 위험목 제거,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 투자선도지구 운영, 공동영농모델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을 회복하고 활용함(안 제53조～제60조)

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함(안 제62조～제66조)

Ⅲ. 총괄 검토

1. 산불 발생 및 정부대응 현황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울산 울주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하여 103,876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198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영남지역의 산불이 역대 최대규모가 된 이유를 산불 발생 기간 중 이상 고온, 건조한 날씨, 강한 서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된 데 따른 것로 분석하고 있음. 경북도청에서도 이번 산불의 이례적인 특징으로 시간당 8.2km의 초고속 산불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불규칙하게 확산되었고, 하천의 부유물이 산불의 매개체가 되어 주변 마을로 불길이 번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산불 발생 현황('25. 3. 21. ~ 3. 30.) 】

구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산청 하동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군	
							온양	언양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2:12	3.25(화) 11:55
주불진화	3.30.(일) 13: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7.(목) 20:40	3.26.(수) 08:10
산불 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산불 영향구역	1,858ha	12,821ha	9,896ha	8,050ha	5,070ha	9,320ha	931ha	63ha
산림 피해면적	3,397ha	28,853ha	26,709ha	16,208ha	6,864ha	20,655ha	1,117ha	73ha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이번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였고, 산불로서는 역대 네 번째의 재난사태[2]와 여섯 번째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음.

【 이번 (초)대형산불의 주요 특징 】

ㅇ 산불 피해규모 (198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 산불 규모 역대 1위: 총 103,876ha ＊ (역대 2위) '00년 동해안 산불 23,794ha
- 단일 시·군 산불 면적 역대 최대: 의성 28,853ha ＊ (종전) '22년 동해안 산불 울진 14,140ha
- 피해액/복구비 역대 최대: 1조 818/1조 8,809억원 ＊ (종전) '22년 동해안 산불 2,261/4,170억원

ㅇ 산불 당시 기상 상황

- 이상 고온, 건조한 날씨, 강한 서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 3. 21. ~ 26. 동안 산불 피해지역의 평균기온은 14.2℃로, 평년('91~'20년)보다 6.4℃ 높은 역대 1위 기록
  ＊ 최근 4개월 경상권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 이하로 역대 최저 수준, 경북권 중심 상대습도도 평년 대비 -15%p
  ＊ 남쪽으로 평년보다 강한 고기압, 북쪽으로 평년보다 강한 저기압이 위치하며 평년 대비 5m/s 이상 강한 서풍 유입

ㅇ 재난사태 선포: 산불 4번째 (2025. 3. 22. ~ 4. 5.)

- 1차) '05년 양양 산불, 2차) '19년 강원 산불, 3차) '22년 동해안 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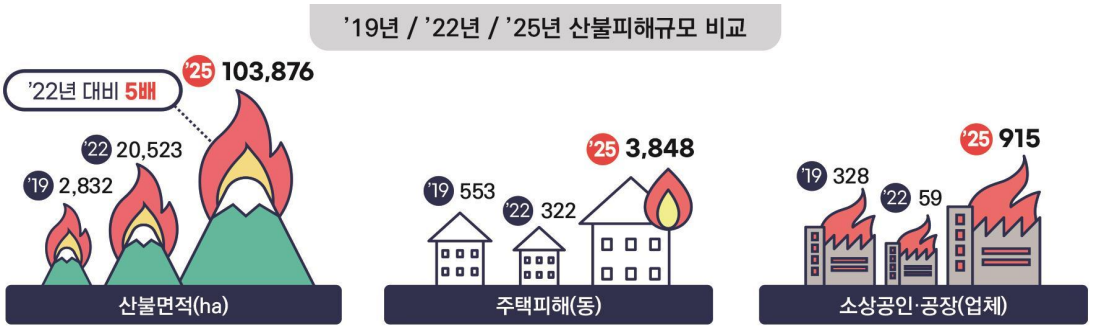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산불 6번째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 ⑦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1차) '00년 산불, 2차) '05년 양양 산불, 3차) '19년 강원 산불,
4차) '22년 동해안 산불, 5차) '23년 4월 산불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법」 제60조[3]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발생한 재난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참고로, 제2항은 이번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신설(2025. 4. 1.)된 규정임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특별재난지역 조건 】

호	재난종류	조 건
1	자연재난	-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	-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공통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산불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4]에 해당하므로,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에 해당하여 재난발생지역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규모, 산불확산 양상,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22일 경남 산청군, 3월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및 경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남 하동군, 3월 27일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는 설명임.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의 피해 현황에 대하여, 인명피해 183명(사망 27명, 부상 156명)[5], 재산피해 총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억원, 공공시설 5,643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재산피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피해물량	피해액
총 계			**-**	**1,081,786**
사유시설 계			**-**	**517,473**
주택	전파(동)		3,592	338,663
	반파(동)		256	11,589
	세입자(세대)		358	-
	주거불가능(세대)		572	-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농기계(대)			17,158	34,900
농작물 / 산림작물(ha)			3,419	45,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 / 24,509 / 8,265	4,673
수산물(마리)			274,365	1,088
어망어구 / 어선(건)			30	173
공공시설 계			**-**	**564,313**
산림청	산림(ha)	국유림	11,218	41,588
		사유림	92,658	352,739
	산림시설(건)		324	15,218

5)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구 분			피해물량	피해액
	행안부	도로(건)	57	13,526
		공공건물 등(건)	86	3,520
		마을기반시설(건)	17	7,269
	환경부	환경기초시설(건)	6	2,095
		상수도 등(건)	68	26,815
	유산청	국가유산(건)	29	45,058
	국방부	군사시설(건)	4	663
	국토부	국도(건)	15	6,566
	농식품부	수리시설(건)	103	3,433
	문체부	문화·체육시설(건)	37	34,193
	복지부	복지시설 등(건)	16	10,806
	산업부	에너지시설(건)	5	472
	해수부	해양시설(건)	2	353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에서는 주택의 전파・반파, 도로・공공건물・마을기반시설・상수도・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피해, 국가유산의 피해[6]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수습·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 36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이루어지는데[참고자료 1. 사회재난 간접지원 항목(36개, 관계기관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3개 시・도의 8개 시・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지원으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7]에

6) YTN, “천년 고찰 고운사 전소... 국가유산 재난 첫 ‘심각’ 발령”, 2025. 3. 25., 2025. 5. 12. 확인 https://www.ytn.co.kr/_ln/0106_202503252229233466

따른 특별교부세(재난안전특교세) 307억원과 구호사업비 3.8억원이 지원되었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 재정 지원 】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 시·도, 8개 시·군 3차례 선포**
- (3월 22일) 경남 산청
- (3월 24일) 경북 의성, 경남 하동, 울산 울주
- (3월 27일) 경북 안동, 경북 청송, 경북 영양, 경북 영덕

ㅇ **(긴급 재정 지원) 재난안전특교세 307억원, 구호사업비 3.8억원**
- (재난안전특교세) 1차 26억원(3.23.), 2차 55억원(3.27.), 3차 226억원(4.1.)
- (구호사업비) 1차 0.5억원(3.23.), 2차 1억원(3.24.), 3차 2.3억원(3.28.)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 총 1조 8,809억원(국비 1조 2,136억원, 지방비 6,673억원)의 복구계획이 수립되었음.

【 시설별 복구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계	국 비	지방비
	총계		-	**1,880,860**	**1,213,608**	**667,253**
사유시설	**계**		-	**495,393**	**346,792**	**148,601**
	구호금(인)		사망27, 부상156	1,572	1,100	472
	구호비(인)		4,329	4,116	2,881	1,235
	교육비(세대)		15	15	11	4
	생계비(세대)		3,823	24,442	17,112	7,330
	주택	**전파**(동)	3,592	317,583	222,308	95,275
		반파(동)	256	11,170	7,819	3,351
		세입자(세대)	358	3,614	2,532	1,082
		주거불가능(세대)	572	1,198	838	360

7)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지원대상	계	국 비	지방비
	농업	농업시설(건)		6,101	29,464	20,626	8,838
		농작물(ha)		1,952	22,360	15,652	6,708
		축산시설(건)		631	10,050	7,036	3,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24,509 /8,265	4,671	3,276	1,395
		농기계(대)		17,158	13,564	9,496	4,068
	어업	어업시설(건)		5	661	463	198
		수산물(마리)		274,365	1,087	761	326
		어망어구 / 어선(건)		30	61	42	19
	임업시설(건)			10	120	85	35
	산림작물(ha)			1,467	40,499	28,350	12,149
	송이 임가(임가수)			990	2,386	1,670	716
	소상공인(업체)			848	6,759	4,733	2,026
공공시설	계			-	**1,385,467**	**866,816**	**518,652**
	산림청	위험목 제거(ha)		1,984	62,887	62,887	-
		복구조림(ha)	국유림	4,310	65,849	65,849	-
			사유림	40,807	624,192	315,552	308,640
		산림시설(건)		324	109,432	63,454	45,978
		응원 헬기 비용(1식)		-	2,319	1,160	1,160
	행안부	도로(건)		57	18,532	9,198	9,334
		건축물철거비 등(시·군)		8	29,148	29,148	-
		임시조립주택(동)		2,996	131,824	65,912	65,912
		마을기반시설(건)		17	28,496	-	28,496
		공공건물 등(건)		86	4,877	2,473	2,404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등(개소)		6	5,924	2,962	2,962
		폐기물처리비(시·군)		8	141,959	141,959	-
		상수도 등(건)		68	38,309	23,941	14,368
	유산청	국가유산(건)		29	49,084	34,731	14,353
	국방부	군사시설(건)		4	1,241	1,241	-
	국토부	국도(건)		15	7,751	7,751	-

구 분			지원대상	계	국 비	지방비
	농식품부	수리시설(건)	103	6,300	2,696	3,604
	문체부	문화·체육시설(건)	37	45,377	33,361	12,016
	복지부	복지시설 등(건)	16	10,612	1,890	8,722
	산업부	에너지시설(건)	5	784	366	418
	해수부	해양시설(건)	2	570	285	285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초)대형산불에 대하여 ① 주거 분야(주거 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 ② 농・어・임・축산업 분야(지원단가 상향, 생계비 지원 등), ③ 마을공동체 복원 추진(마을 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 등) 및 ④ 기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송이 피해 임가 생계비 지원 등) 지원을 중점 지원사항으로 계획함.

【 이번 (초)대형산불에 대한 중점 지원사항 】

ㅇ **주거분야**
- (주거 지원) 주택 전·반파자, 세입자 대상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現 지원단가에 확대 지원
  ※ 전파 +60백만원(반파 50%), 세입자 +5백만원
- (임시조립주택) 총 2,996동(개당 44백만원)에 대한 국고 50% 지원

ㅇ **농·어·임·축산업 분야**
- (지원단가 상향) 주요 작물의 대파비(代播費) 및 농·어업, 임·축산시설, 농기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피해 복구단가 현실화
- (생계비 지원) 농·축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피해 규모·종류별로 생계비 최대 12개월 차등 지원

ㅇ **마을공동체 복원 추진**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을 고려하여, 단순 복구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 향후 추가 확대 예정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특사업(신규) 5개소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52조를 준용하여 추진(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일반사업보다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

ㅇ **기타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확대,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5백만원 → 10백만원(+5백만원), ※ 구호기금 2백만원 포함
- (송이) 피해 임가별로 생계비(2인 기준 1.2백만원) 2개월 지원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법[8]으로 「재난안전법」이 마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재난에 대응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음.

제정안들은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수습과 지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재난안전법」에서 재난피해에 대하여 총괄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9]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향후 유사사례로서 재난이 발생

---

8)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개념으로, 일반법은 일률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람, 사항, 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각각 의미함(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6.)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할 때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본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4·16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특별법의 경우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입장임.

둘째,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과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전례 없는 추가 지원방안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5월 1일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여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임.

셋째, 농업·임업 등 복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참고로, 지난 2019년 강원지역 산불 발생 당시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2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음.

【 2019년 강원지역 산불 발생 당시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연번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제명	처리 경과
1	이양수의원 (2020216)	'19. 5. 7.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행안위 회부('19. 5. 8.) 행안위 상정('19. 11. 11.) 임기만료폐기('20. 5. 29.)
2	송언석의원 (2020841)	'19. 6. 5.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행안위 회부('19. 6. 14.) 행안위 상정('19. 11. 11.) 임기만료폐기('20. 5. 29.)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당시 두 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정 재난에 대한 추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유사 입법이 이어질 수 있고, 특별법의 제정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지역간·재난간 복구지원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10)]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이번 (초)대형산불은 산림의 피해면적이 103,876ha(국유림 11,218ha, 사유림 92,658ha)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로, 주택 3,848동(전파

10)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9, pp. 13~14.

3,592동, 반파 256동)에 피해가 발생하여,[11]

피해지역의 마을공동체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주여건 측면에서 큰 위협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재난과 구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일례로 경북의 산불피해를 입은 마을공동체로서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24개 지구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66%가 소실되었고, 마을의 주택 100%가 소실된 지구까지 있는바,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재민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이재민의 지역 생활기반 유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경북 산불 마을공동체 피해 현황 】

연번	시군	지구명	위 치			부락명	소실/전체 (채)
			읍면	리동	지번		
합계	3개사업	24지구					865/1,312
소계	특별도시재생사업(국토부) / 2지구						274/395
1	영덕	노물리 석리	영덕읍	노물리 석리	90-2 233	-	234/312
2	청송	부곡1	청송읍	부곡리	100-5	달기약수탕	40/83
소계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행안부) / 5지구						163/377
1	안동	추목	임하면	추목리	331	원추목,다리골	36/56
2	안동	중마	임하면	임하리	576-7	중마	31/171
3	영덕	수암리	지품면	수암리	214-5	-	34/50
4	영덕	대곡리	축산면	대곡리	315-1	-	39/40
5	의성	구계1	단촌면	구계1리	1213-17	지동골	23/60

11)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는 2019년 강원 지역 산불(주택피해 553동) 및 2022년 동해안 산불(주택피해 322동)과 비교하면 각각 6.96배와 11.95배 규모임.

연번	시군	지구명	위 치			부락명	소실/전체 (채)
			읍면	리동	지번		
소계	마을기반조성사업(자체) / 17지구						428/540
1	안동	신흥	남선면	신흥리	390-4	신흥	39/42
2	안동	토갓	남선면	원림리	57-1	토갓	24/26
3	안동	박곡	임동면	박곡리	243	상박실	31/32
4	안동	명진	일직면	명진리	94	명진	19/33
5	안동	상무수	남선면	외하리	139	상무수	15/15
6	안동	지르골	남선면	도로리	237-2	지르골	14/15
7	안동	어담	풍천면	어담리	352	거물억	22/27
8	안동	장사리	일직면	원호리	613	장사리	19/37
9	영덕	산안리	지품면	신안리	122-18	-	12/13
10	영덕	기암	축산면	기암2리	388-3	-	16/18
11	영덕	매정	영덕읍	매정1리	132-1	-	46/54
12	의성	구계2	단촌면	구계2리	657	구계	20/30
13	의성	구계3	단촌면	구계2리	468	외천	21/32
14	청송	지경	파천면	지경리	364-3	본마을,고무실	40/50
15	청송	덕천3	파천면	덕천리	477	이사리	22/33
16	청송	기곡	진보면	기곡리	261-2	조시,텃골	32/40
17	청송	괴정2	진보면	괴정리	458	갈머리	36/43

자료: 경상북도

둘째, 이번 (초)대형산불은 그 피해가 극심하여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현행 법령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법을 통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피해지원과 복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전 분야에 걸친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밝힌 바 있음.[12)]

종합하면, 이번 (초)대형산불이 피해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여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인하여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 법률안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54호’, 2025. 5. 2.

3.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4건의 제정안은 크게 ① 총칙, ②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 ③ 피해 복구 지원, ④ 산불 대응 역량 강화(박형수·이만희의원안), ⑤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박형수·이만희의원안), ⑥ 보칙 및 ⑦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별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체계 비교 】

김태선의원안 (5장, 39개 조문)	박형수의원안 (6장, 65개 조문)	임미애의원안 (4장, 27개 조문)	이만희의원안 (7장, 7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배상 및 보상 등	-	제2장 피해자 보상	제2장 배상 및 보상 등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장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제3장 피해자 신속 지원 등	제3장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	제3장 피해복구 및 재건	-	
-	제4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제4장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
-	제5장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	제5장 재정·행정 지원 및 특례
제4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3조 벌칙)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장 보칙
제5장 벌칙			제7장 벌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배상·보상 위원회”를 신설하여 산불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위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실

조사, 결정서의 통지, 이의신청 등 보상금 지급의 법적 절차를 규정함.

한편, 박형수의원안은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간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둘째, 4건의 제정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주거·생활·의료지원,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복구비 지원,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 등 피해 경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다만, 피해지역의 산업단지 복구 및 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박형수·이만희의원안), 관광사업자 지원(박형수의원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특례(박형수·임미애·이만희의원안), 심리상담 지원(김태선·박형수·이만희의원안), 근로자의 치유휴직(김태선·이만희의원안)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 및 조문 구성에는 제정안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

셋째, 박형수·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피해지역 산림 회복을 위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음.

박형수의원안은 경제회복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자연휴양림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박형수·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를 위한 공동영농모델,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규정함.

아울러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 수립, 산불폐기물 처

리, 위험목 제거사업,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넷째, 박형수·이만희의원안은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지원,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정기적 산불대응교육, 마을순찰대 운영, 연구개발 등 상시적 산불 대응 체계를 제정안에 포함하고 있음.

다섯째, 박형수·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복구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및 증액교부금 교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등 재정상 특례와 피해지역 내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상 특례를 규정하는 장을 별도로 두고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만희의원안이 피해자 구제, 경제적 회복, 산림 복구, 산불 예방 및 대응, 재정 확보를 모두 포괄하는 제정안이라면, 김태선의원안은 피해자 배상 및 위로금 지원, 박형수의원안은 지속 가능한 지역 재건, 임미애의원안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13]에 집중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임.

13) 임미애의원안은 보상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배상 및 보상 등>		**<제2장 피해자 보상>**	**<제2장 배상 및 보상 등>**
(제5조)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제6조)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제5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	(제5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정기적 점검 및 성과 평가	(제8조) 피해자 단체	
(제7조) 사실조사 등	(제9조)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제7조) 사실조사	(제7조) 사실조사 등
(제8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제11조) 보상금의 지급	(제18조) 배상금 지급 (제19조) 위로지원금 지급
(제9조) 손실의 보상			(제8조) 손실의 보상
(제10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9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1조) 신청인의 진술권			(제10조) 신청인의 진술권
(제12조) 지급결정			(제11조) 지급결정
(제13조) 결정서의 송달		(제10조) 결정서의 통지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4조) 재심의		(제14조) 재심사 신청	(제13조) 재심의
		(제15조)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6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5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6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6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17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17조) 소멸시효	(제67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장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제3장 피해자 신속 지원 등>**	**<제3장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19조) 지원의 원칙	(제10조) 피해유형의 분류	(제18조) 지원의 원칙	(제20조) 지원의 원칙
(제20조) 피해자 등의 참여보장		(제19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21조) 피해자 등의 참여보장
(제21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지원			(제22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3조)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지원
(제22조) 주거지원금 등	(제11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20조) 생계지원금 등	(제24조) 주거지원금 등
	(제12조)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활용		
	(제13조) 의료지원		
		(제23조) 복구비 등의 선지급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3조)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제22조)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6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제26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7조) 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제27조) 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제15조) 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		(제28조) 농업·어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8조) 특구지역 국고보조 등의 복구지원		
	(제19조) 관광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제25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5조)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61조) 금융지원 및 협조 요청	(제21조) 피해자 금융지원 (제26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30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22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조세감면 및 납부유예		(제32조) 조세감면 및 납부유예
	(제24조)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33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7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1조)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심리치유 지원		(제3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8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3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29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3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30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37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제21조)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심리치유 지원		
(제3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8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지구 조성
	<제3장 피해복구 및 재건>		
	(제25조) 공동주택단지 조성		
	(제26조) 공동주택단지 지원		
	(제28조)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29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39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30조) 추모시설 설치 지원		
	(제41조) 관광단지개발		
	(제42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완화		
	(제43조) 에너지 보급 지원		
	(제44조) 체육시설 결정 지원		
	(제45조) 공공용 시설 설치 시 부담금 감면		
			(제40조)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장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
	(제27조) 산불재난지역 공동 영농모델 지원		(제57조) 산불재난지역 공동 영농모델 지원
	(제31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61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2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58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33조) 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제59조) 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제34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제60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제35조) 산불폐기물 처리 등		(제52조) 산불폐기물 처리 등
	(제36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53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7조) 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제54조) 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제38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55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39조) 산림 투자선도지구		(제56조) 산림 투자선도지구
	(제40조) 피해지역 산림관리 권한의 위임		
	<제4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제46조)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제41조)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제48조) 산불예측 및 대피 체계 고도화		(제42조) 산불예측 및 대피 체계 고도화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9조) 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제43조) 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제47조) 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 사업		(제44조) 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 사업
	(제50조) 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제45조) 장비·시설 등 지원
			(제46조) 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제51조)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제47조)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제52조) 재해예방시설 설치		(제48조) 재해예방시설 설치
	(제53조)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제49조)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제54조) 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제50조) 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제55조)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51조)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5장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제5장 재정·행정 지원 및 특례>**
	(제56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62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57조)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제63조)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제58조) 증액교부금 지원		(제64조) 증액교부금 지원
	(제59조) 피해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제65조) 피해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제60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제66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6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장 보칙>**
(제33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제69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제34조) 중복지원 제한			(제70조) 중복지원 제한
(제35조) 비밀준수 의무			(제71조) 비밀준수 의무
(제36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72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37조) 권리의 보호	(제62조) 권리의 보호	(제27조) 권리의 보호	(제73조) 권리의 보호
(제38조) 배상금 등의 환수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제74조) 배상금 등의 환수
		(제13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제5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75조) 벌칙
	(제64조) 권한의 위임		
	(제65조) 시행령 위임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공포 후 즉시 시행	(제1조) 공포 후 즉시 시행	(제1조) 공포 후 즉시 시행	공포 후 즉시 시행
	(제2조) 시행 준비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적용례		

4. 총괄 검토의견

4건의 제정안은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거나 ②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제정사항 】

연번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제명	제정사항	
				피해지역 지원	산불대응 제도개선
1	김태선의원 (2209615)	'25. 4. 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함	미포함
2	박형수의원 (2209855)	'25. 4. 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포함	포함
3	임미애의원 (2209957)	'25. 4. 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포함	미포함
4	이만희의원 (2209998)	'25. 4. 21.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포함	포함

주1: 피해지역 지원 → 배상·보상위원회 설치, 피해자 회복 지원, 피해복구 및 재건사업 시행 등
주2: 산불대응 제도개선 →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산불예측 고도화, 대응장비·인프라 확보 등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첫째, 피해지역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이미 지원되었거나 앞으로 지원될 정부 계획의 내용과 함께, 각 정책 수단을 담당하는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가 있음.

예컨대, 제정안은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채무 상환유예, 보증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박형수의원안 제16조, 임미애의원안 제22조, 이만희의원안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보증요율 및 비율 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미 상당액수를 지원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산불폐기물 처리 등의 지원(임미애의원안 제22조, 박형수의원안 제35조, 이만희의원안 제52조)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 따르면 재난 폐기물 처리비는 현재도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에서 100%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번 산불에 대해 폐기물 처리비 1,420억원을 집행할 예정임.

그 밖에도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박형수의원안 제16조),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임미애의원안 제22조),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박형수의원안 제28조, 이만희의원안 제38조) 등 상당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중복 규정이나 정책의 비일관성을 방지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제정안들을 수용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일부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 중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이번 (초)대형산불의 발생을 계기로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박형수의원안·이만희의원안의 산불 대응 제도개선 사항 】

연번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1	제46조(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제41조(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2	제47조(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제44조(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3	제48조(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제42조(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4	제49조(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제43조(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5	-	제45조(장비·시설 등 지원)
6	제50조(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제46조(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7	제51조(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제47조(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8	제52조(재해예방시설 설치)	제48조(재해예방시설 설치)
9	제53조(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제49조(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10	제54조(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제50조(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11	제55조(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51조(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정안은 이들 규정에서 ‘경북·경남·울산’, ‘피해지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제도개선 사항을 이번 (초)대형산불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산불재난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특별법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람, 사항, 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산불에만 적용하려는 지원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이 경우, 해당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해당하는 동 제정안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로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일반법[14]을 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15]

14) 「산림재난방지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로 현재 산불에 대한 일반법은 「산림보호법」임. 다만,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여야 2026년 2월 1일 이후에도 해당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임

15) 참고로, 동 제정안들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소관이지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사항임.

Ⅳ.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리체계 효율화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하여 재난 회복력을 갖춘 지역 기반을 조성하며,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하여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리체계 효율화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지역의 지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로 피해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리체계 효율화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하고 있음.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대상	’25.3.21.~30.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초대형산불 피해		’25.3.21.~30. 울산, 경북, 경남 초대형산불 피해	’25.3.21.~30. 울산, 경북, 경남 초대형산불 피해
수단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생활·심리안정 등의 지원	대형산불 대응 정책 수립, 피해주민 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의 경제회복,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리체계 효율화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생활·심리안정 등의 지원, 지역경제 회복,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리체계 효율화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목적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4·16 세월호 참사 및 12·29 여객기참사 등 선행 재난 관련 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을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16)]

제정안에서 피해구제 및 지원 외에 산림관리체계 효율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규정하고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까지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는 데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특별법안의 목적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지원에 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16) 참고로, 세월호 및 12·29여객기 참사 등 선행 재난 관련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 규정을 두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등 제정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등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21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불로서 그 피해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나 강풍 등으로 산불이 주거지 및 도심지를 위협하여 인명피해, 주택 및 생산·영업 시설 소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산불로서 제5조에 따른 ‘초대형산불피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원및보상위원회'가 심의하여 초대형산불로 판정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	2. "피해주민"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 재산, 심리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초대형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			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
	4. “지역재건”이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4. “지역재건”이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5. “산불고위험지구”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위험이 큰 지역으로서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산불고위험지구”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위험이 큰 지역으로서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이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채취 임산물”이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거나 산림에서 채취되는 임산물로서 송이, 능이 등의		6. “채취 임산물”이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거나 산림에서 채취되는 임산물로서 송이, 능이 등의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버섯류와 수액 등 임산물을 말한다.		버섯류와 수액 등 임산물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임시주거시설”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공간으로, 피해주민의 사용 후 마을 공동시설, 관광 숙박시설,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등 지역 활성화 용도로 전환·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임시주거시설”이란 초대형산불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공간으로, 피해자의 사용 후 마을 공동시설, 관광 숙박시설,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등 지역 활성화 용도로 전환·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산불폐기물”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9. “산불폐기물”이란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10.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화된 도시 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10.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제정안들은 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초)대형산불을 대체로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안은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 경상남도 김해시를 포함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의 피해규모와 특별법안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초)대형산불의 정의 규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임미애의원안은 초대형산불의 정의에서 시간적, 공간적 요건을 규정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규모와 피해유형에 해당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초대형산불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을 최종적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을 피해구제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초)대형산불은 특별법안의 핵심적인 정의로서 그 범위에 따라 피해자, 피해지역 및 그 지원범위가 결정되므로, 피해자 등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대형산불의 범위는 법률에서 사전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초대형 산불	'25.3.21.~30. 울산(울주), 경북(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경남(산청, 하동, 김해), 전북(무주), 충북(옥천)에서 발생한 산불	'25.3.21.~30. 경북(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25.3.21.~30. 경북(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경남(산청, 하동, 김해), 울산(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피해 + 위원회 심의·판정	'25.3.21.~30. 경북(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경남(산청, 하동, 김해), 울산(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② 피해지역

제정안들은 제정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피해지역의 범위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17]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규정하는 안과 제정법에 따라 추가 지정된 지역도 포함하는 안 등으로 구분됨(김태선의원안·이만희의원안 제2조제2호, 박형수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원안·임미애의원안 제2조제3호).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3월 22일에 경남 산청군, 3월 24일에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3월 27일에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는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은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규정하여 제정법의 각종 지원 및 복구대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일시/지역)** 2025. 3. 22. 경남 산청군
2025. 3. 24.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025. 3. 27.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피해수습 지자체)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선포 배경)**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대통령공고 제358·359·36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선포요건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 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요청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대통령)	▶	대통령 재가

▌중점 지원사항▐

① **주택 피해 이재민 지원**('22년 경북·강원 산불 지원 사례 이상의 수준)

구분	주택 전파	주택 반파
금회	**80~96백** (면적별 20~36+추가지원 **60**)	**40~48백** (면적별 10~18+추가지원 **30**)
'22년	**38백** (16+추가지원 **22**)	**19백** (8+추가지원 **11**)

* 기부금 배분액을 더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가능**(모집기관과 협의 예정)

②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

* 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③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및 일상회복지원 시설사업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원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백만원→10백만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에 제정법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제정법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 모두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관련 규정(지정주체,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18]에서도 "피해지역"을

1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피해자

제정안들은 제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태선의원안・이만희의원안은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등 피해자의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임미애의원안은 초대형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김태선·이만희의원안 제2조제3호, 박형수·임미애의원안 제2조제2호)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피해자	초대형산불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입은 자로서 피해지역에서 ㉮ 거주, ㉯ 사업장 운영・근로활동・학업수행, ㉰ 동산·부동산 소유, ㉱ 체류	대형산불로 신체·재산·심리 피해를 ·심리 등 피해를 입은 자	산불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입은 자 ※ 초대형산불 원인 제공자 제외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4・16세월호참사 및 12・29여객기참사의 경우 법률에서 피해자를 해당 재난으로 인하여 희생된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고,[19]

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10·29이태원참사의 경우 해당 재난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 외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그 범위가 공적인 기관에 의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

제정안에서도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2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④ 기타

박형수의원안·이만희의원안은 지역재건, 산불고위험지구, 채취 임산물, 산업단지, 임시주거시설, 산불폐기물, 복합기능직접지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임미애의원안 제2조제4부터제10호까지).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역재건	물리적 복구 +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 기반 마련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불 고위험 지구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위험이 큰 지역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채취 임산물	산림에서 채취되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수액 등 임산물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업단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임시주거 시설	피해주민 임시주거공간으로 지역 활성화 용도로 전환·활용 가능한 시설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불 폐기물	대형산불로 인한 생활·건물 등 각종 폐기물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복합기능 직접지구	주거·상업·공공서비스·교통, 에너지효율화, 기후회복력을 갖춘 지구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산림청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2025.3.21. 이후 발생한 산불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경남·울산·경북 지역(8개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제1호의 초대형 산불의 정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시군구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② 피해지역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제정법의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의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산불고위험지구

산림청은 박형수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불고위험지구’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21] 법 규범 상호 간 충돌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1)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채취 임산물

산림청은 박형수의원안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취 임산물’은 제34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서 한 번만 사용되므로,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기보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3. 적용범위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정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조).

박형수의원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형산불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법인 및 단체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1. 피해지역의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두고 있던 자 2. 피해지역에서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던 법인·단체 3. 대형산불로 인하여 연계적으로 기능이 정지되거나 손실을 입은 인근 지역 또는 주민 ③ 이 법은 대형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간접적 피해의 판정 기준, 지원 범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형산불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법인·단체로 하고, 간접 피해의 판정 기준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3조).

구분	박형수의원안
적용범위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법인·단체 간접피해 기준 및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적용범위는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게 되는데, 박형수의원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다기 보다는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제정안의 정의에서 이미 적용대상인 피해지역과 피해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반영할 내용이 있다면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 제3조, 박형수의원안 제4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피해주민 보호, 지역 회복 및 재건, 재난대응체계 강화, 산림관리체계 개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초대형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 기술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가 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재건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산림 관련 업무와 권한의 합리적 분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재난에 대비하여 구호물품 비축, 재난대응장비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예방 및 대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등은 피해지역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재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산림 관련 업무와 권한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등은 미래 재난에 대비하여 구호물품 비축, 재난대응장비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예방 및 대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 등은 AI 기반 산불예측시스템 구축, 산불고위험지구 지정·관리, 주민대피훈련 등 첨단 재난대응 체계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박형수의원안은 국가는 관련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안과,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조치 책무까지 명시하는 안, 피해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행정·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재건을 위한 상호협력, 재난 예방·대비 체계 구축 책무까지 명시하는 안 및 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 노력 책무까지 명시하는 안 등으로 구분됨(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 제3조, 박형수의원안 제4조).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국가·지자체	피해 회복·안정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③피해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⑤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재건을 위한 상호협력, ⑥재난 예방·대비체계 구축	피해보상 및 지원 종합시책 수립·시행	①피해 회복·안정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③피해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⑤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재건을 위한 상호협력, ⑥재난 예방·대비체계 구축, ⑦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
국가	피해지역 지원 예산 조치	①피해 회복 및 재난대응 강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④행정·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지역 지원 예산 조치, ④행정·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
지자체		②세부 실행계획 수립·이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어느 범위까지 명시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시책 수립·시행 의무와 국가의 예산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22)]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김태선의원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책 수립·시행 및 예산상 조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22) 참고로, 세월호 및 12·29여객기 참사 등 선행 재난 관련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이번 산불과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또는 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 제4조 및 박형수의원안 제5조).

추가적으로 박형수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박형수의원안 제5조 단서 및 이만희의원안 제4조 단서).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관광진흥법」, 「산림재난방지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대형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대형산불 피해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안과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 안 등으로 구분됨(김태선의원안·임미애의원안·이만희의원안 제4조, 박형수의원안 제5조).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재난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 + 다른 법률이 피해자(지역)에 유리할 경우 그 법을 적용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다른 법률이 피해자(지역)에 유리할 경우 그 법을 적용

제정안은 이번 산불 피해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정

안의 특별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율의 상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운영 중인 제도의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간 해석·집행상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안별로 또는 추후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의 목적이 산불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해 충분한 구제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서 원칙적으로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입법례도 있음.

【 참고 입법례 】

법 률	조 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률	조 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개별 피해자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확하게 판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특정 법률을 명시하기보다 임미애의원안과 같이 ‘초대형산불 피해보상과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6.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5조·제8조·제9조, 박형수의원안 제6조, 임미애의원안 제5조·제6조, 이만희의원안 제5조·제8조·제18조·제19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조(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① 국가가 재해를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확인하고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①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지원단을 둔다.	제5조(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① 국가가 초대형산불 판정 및 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⑤ (생 략)	제5조(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① 국가가 재해를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확인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피해주민 인정 및 유형 결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초대형산불 판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원금 및 사업 지원 범위와 기준 설정 4.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계획의 적정성 심의 5. 피해유형별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6.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7.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심의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충돌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유와 대안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결정 기준 및 보상금액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 피해유형별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5.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이 우선한다.		
제8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제18조(배상금 지급)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며, 임시지급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50%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의 정도,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위로지원금 지급)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의 정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2. 그 밖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의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울산			제8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2. 그 밖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경북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제1항 각 호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제1항 각 호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별로 신설하는 위원회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음. 김태선의원안·이만희의원안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로, 임미애의원안은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로, 박형수의원안은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위원회'로 규정함.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에도 차이가 있음. 김태선의원안·이만희의원안은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구조 등에 참여함으로써 생계 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미애의원안은 초대형산불 판정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은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금, 지원사업,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설 위원회 명칭 및 심의·의결 안건 】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위원회 명칭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초대형산불피해 지원및보상위원회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배상, 보상 등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초대형산불 판정, 보상금 지급 등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금, 지원사업, 지방소멸 방지 사업 등

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제정안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추가하여, (초)대형산불 피해자에 대한 대한 배상·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초)대형산불의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취지임.

「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난[23]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사례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4]에 따른 포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4)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있음.

다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5월 2일[25]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발표했고,[2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비, 생계비, 복구비 등을 심의[27]할 예정이라는 점[28]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들을 통해 신설하는 (초)대형산불의 피해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조직과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5월 2일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피해에 대해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농업분야 지원단가와 지원율을 상향·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5) 참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 1일 재난대책비를 6,600억원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7) 경상북도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경상북도 산불피해 지원안내서」 10면, 2025. 4. 26.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산불 피해 지원의 주요 사항 】

① **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포함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모집기관과 협의) ②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 * 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③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시범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10백만 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5.5.2. 보도자료,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전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② 위원회 심의 내용

㉮ 배상금(김태선·이만희의원안)

김태선·이만희의원안은 위원회 심의대상인 배상금의 범위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국가 외의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국가가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김태선·이만희의원안은 피해자가 국가 외의 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국가가 「민법」 제469조제1항[29]에 따라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대위변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채무의 변제는 그 채무의 성질상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

29)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니하거나 당사자의 반대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제삼자도 할 수 있다는 점,

「재난안전법」[30] 및 「재해구호법」[31]에서 국가로 하여금 사회재난에 따른 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호비용에는 원인제공자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이행하는 대위변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는 점[32]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1) **「재해구호법」**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9 선고 2023나1611, 2023나1628 판결 등 참조(2024. 6. 27.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

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배상금을 추가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외의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지역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33]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경감에 따라 국가가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이 경감되는 경우, 제정안에서처럼 산불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를 보상금이 아닌 배상금으로 규정하면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손실보상금(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태선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은 국가가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

3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록 규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34]에서 협의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업무 영역에 중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상금(임미애의원안), 지원금(박형수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제6조제2항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원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 제6조제2호는 보상금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상금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박형수의원안 및 임미애의원안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금[35]이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에 부족한지,

---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2.

만일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지원 및 보상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종합계획 등(박형수의원안)

박형수의원안에서는 위원회가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간 조정을 통한 중복 방지 및 지방소멸 방지·활성화 사업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조정하여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관계 부처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 제59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산불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은 원인자의 과실정도,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상·보상위원회의 설치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는 해당 재난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유사한 성격의 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36]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정한 재난 사안별로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활용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배상·보상을 위한 분과 또는 전문위원회 등을 연계·설치하여 유사 재난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제정안은「4 ·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산불과 관련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월호의 경우 책임소재 등 여부가 문제되어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을 통해 가해자 및 국가배상책임 규명이 이루어진데 비해, 초대형 산불의 경우 실화로 인해 발생하였고 사안이 명확하므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보상' 형태로 지급결정을 단일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및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부상 당한 경우 보상금 지급 근거를 재난안전법에서 이미 규정하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있으므로,[37] 그 이외의 상황은 「재난안전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38]

37) 재난안전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부상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38) 예시: 재난안전법 64조(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등

7. 위원회의 구성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와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지원 조직,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선의원안 제6조, 박형수의원안 제6조·제7조, 임미애의원안 제5조·제8조, 이만희의원안 제6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의료·복지·고용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배상 및 보상 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 3. 피해지역 주민 대표 및 이재민 단체 대표 4. 산불·재난·복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민간 구호단체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단체의 추천을 존중하여 위	제5조(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피해지역 주민 대표 및 이재민 단체 대표 4. 산불·재난·복구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의료·복지·고용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배상 및 보상 업무, 산림재해,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에 관하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풍부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피해자 대표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피해지역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실무지원단에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국무총리가 피해보상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 단체) ① 피해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피해지역에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위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피해자 대표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김태선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박형수의원안과 임미애의원안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들은 모두 피해 지역의 주민 대표와 피해지역의 회복·복구 등의 업무 관련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박형수의원안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피해지역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제정안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들은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 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리고 임미애의원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구성	1~10명 (범관, 변호사, 보건·의료·복지·고용 전문가, 배상·보상 전문가)	1~15명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추천, 피해주민 대표, 산불·재난·복구 전문가, 민간 구호·복지 관계자)	1~15명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추천, 산불·재난·복구 전문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위원장	국무총리가 임명	국무총리가 지명	행안부장관	
지원조직	지원조직	실무지원단	전문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운영	대통령령으로 위임	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중대사항은 2/3)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령으로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피해지역의 주민 대표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피해지역의 주민 대표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가 배상·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임미애의원안처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서 실무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김태선의원안·이만희의원안처럼 위원회에서 배상·보상을 심의

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10인 또는 15인 이하의 위원만으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및 위원회의 심의 안건 등과 종합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의견제출 요청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태선·임미애·이만희 의원안 제7조, 박형수의원안 제8조·제9조)

박형수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반기별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매년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9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피해주민,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복구 및 재건사업	제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행정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실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정기적 점검 및 성과 평가)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제5조(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반영하여야 한다.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위원회 사실조사	사실조사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요구 및 협조	관계기관 등(피해주민 포함)에 자료 제출 요구 및 협조, 요구 불응 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보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국가·지자체 자료 상호 공유		
점검 평가		반기별 점검 매년 성과평가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제정안에서 규정한 심의대상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39]

39)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박형수의원안 제8조, 이만희의원안 제5조제4항~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초대형 산불 피해 회복 및 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사실 조사 근거 규정 등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및 위원회의 심의 안건 등과 종합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들은 배상금, 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선의원안 제10조～제18조・제33조, 박형수의원안 제6조, 임미애의원안 제9조～제11조・제13조～제16조, 이만희의원안 제9조～제17조・제69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8조 및 제9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급신청자에게 알려야	제9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8조, 제18조 및 제19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결정 기준 및 금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결정, 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제10조(결정서의 통지) 위원회가 제9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6조(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⑤ 제2항에 따른 피해인정 및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주민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주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제14조(재심사 신청)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급신청자는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제13조(재심의) ①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거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급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에 따른 신청 흠결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신청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0조(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받은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14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제16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신청자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제16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지급신청자는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7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1조의 지급결정 및 제16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 등은 재난구호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69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 등은 재난구호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2. 제9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3.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4. 그 밖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이후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9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3.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이후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나. 검토의견

4건의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배상금·보상금·지원금 지급 결정 또는 피해주민 인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김태선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재심의 신청 외에도 배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차,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의견진술권, 위원회의 지급결정, 지급결정서의 송달 및 배상금 등의 지급,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임시 지급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세부적인 지급 절차 및 지급절차에서 신청인의 권리·의무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보상금의 지급 결정,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 신청, 보상금의 지급 및 다른 보상과의 관계 및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박형수의원안은 피해 인정 결정에 대해 피해주민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급신청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서면 제출		증빙서류 첨부해 위원회에 제출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의견청취	신청인의 의견 진술권 보장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지급결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결정 (1회 30일 연장 가능)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1회 30일 연장 가능)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결정통지	결정 후 30일 이내 송달		지체 없이 통지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재심의	①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①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②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③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①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②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신청인 동의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받고자 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동의 효력	지급결정 동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다른 보상과 관계			동일 사유로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환산금액은 중복지급 제외	
임시지급 및 정산	신청인의 서명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배상금 등의 임시지급 가능, 임시지급액이 결정액보다 클 경우 정산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	국가는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따라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선지급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요경비 선지급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구상권 행사 종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배상금, 보상금, 선지급금, 복구비용)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제정안에서 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주민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 절차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보상·지원금 정책의 정책수용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김태선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은 배상금,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와 지급의 효력 등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상금 등의 지급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국민의 이해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절차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및 위원회의 심의 안건 등과 종합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법무부는 제정안은 국가 등이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배상금·보상금·선지급금·그 밖에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외의 성격을 갖는 금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 보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즉, 원인제공자에게 보상금, 선지급금, 그 밖에 지출한 비용을 구상하는 경우라면, 원인제공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 외에 부분까지 구상 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40]

40) 최근 법원이 세월호피해보상법상 보상금, 선지급금, 그 밖에 지출한 비용의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금 외에 보상금, 경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례 존재[서울고등법원 2024. 4. 2. 자 2020카키20050 위헌제청결정, 헌법재판소 사건 계속 중임(헌법재판소 2024헌가6 사건)]

10. 지원의 원칙, 피해유형의 분류 및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들은 특별법상 국가 등의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피해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지원 계획 수립 시 피해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19조·제20조, 박형수의원안 제10조, 임미애의원안 제18조·제19조, 이만희의원안 제20조·제21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9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 등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18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 등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10조(피해유형의 분류) ① 피해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피해: 주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	③ 국가 등은 피해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거, 생계, 건강, 심리, 교육 등 2. 사업피해: 영업, 시설, 설비, 재고, 건물, 사업장, 공장, 창고, 기자재 등 3. 산업피해: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주된 업종분야 4. 고용피해: 실직, 휴직, 임금 감소 등 5. 공동체피해: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문화유산, 의료시설 등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피해유형, 피해 판정기준, 지원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1. 개인피해: 주거, 생계, 건강, 심리, 교육 등 2. 사업피해: 영업, 시설, 설비, 재고, 건물, 사업장, 공장, 창고, 기자재 등 3. 산업피해: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관광업 등 4. 고용피해: 실직, 휴직, 임금 감소 등 5. 공동체피해: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문화유산, 의료시설 등
제2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19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검토의견

① 지원의 원칙

김태선의원안(제19조)과 이만희의원안(제20조제1항·제2항)은 국가 등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추가로 이만희의원안(제20조제3항)은 피해 유형을 분류하면서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제18조)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일생상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지원 분야를 생계·주거·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으로 다른 제정안보다 넓게 명시하고 있고,

국가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국가 등의 의무 사항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특별법의 취지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국가 등의 지원 원칙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	-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우선 시행 의무	-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 일생생활 전반을 **통합 지원**	-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	-	외국인·장애인·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
	-	-	-	피해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의무

다만, 현행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41]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주민 구호, 주거 시설 복구비 지원, 생계안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6조제5항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이미 현행법 체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미애의원안 중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에 관한 규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42]과 지난 202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43]의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데,

재난의 특성상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가 있는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참사'와 달리, 이번 산불 재난의 경우 노인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의 상당수가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② 피해유형의 분류

박형수의원안(제10조)과 이만희의원안(제20조제3항)은 피해 지원을 위한 유형을 개인피해, 사업피해, 산업피해, 고용피해, 공동체피해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세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피해유형 분류	개인피해	주거, 생계, 건강, 심리, 교육 등	
	사업피해	영업, 시설, 설비, 재고, 건물, 사업장, 공장, 차고, 기자재 등	
	산업피해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주된 업종 분야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관광업 등
	고용피해	실직, 휴직, 임금 감소 등	
	공동체피해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문화재, 의료시설 등	

4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개인피해와 공공시설 복구 등 공동체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안전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사업피해와 산업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피해 및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대해서는 주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경영 안정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부칙에는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③ 피해자 등의 참여보장

김태선의원안(제19조), 임미애의원안(제19조), 이만희의원안(제21조)은 모두 동일하게 국가 등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산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누락없이 최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분	김태선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피해자 등 참여보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 의무		

다만, 지난 2025년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별도의 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액을 총 1조 818억원으로, 피해 복구비를 1조 8,809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지원 기준 상향·확대 등 지원 종합대책 마련하여 피해지역 마을 공동체 및 주민 일상 회복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지원의 원칙

행정안전부는 먼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등의 지원과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령의 체계에서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기 수립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서 이미 기존의 지원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산불(2019년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2022년 경북·강원 산불)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피해유형의 분류

행정안전부는 피해유형의 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개인피해(주거·생계·건강·심리·교육 등)와 관련, 주거·생계·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주거비, 생계비, 고등학생의 수업료(면제)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심리 지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법」 제4조[44]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위생지도, 심리회복의 지원 등을 하고 있어, 현행법령 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임.

둘째, 사업피해(영업·시설·설비·건물 등) 및 산업피해(농·임·어·제조·관광업 등) 관련, 「재난안전법」의 개정(2024. 5. 1.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신설 또는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셋째, 공동체피해(공공·마을공동 시설, 문화재, 의료시설 등)와 관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에 대

44)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마을공동 시설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 지역·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사업[45]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마지막으로, 현행 재난안전법령 및 재해구호법령 체계에 있는 사항 외에 산업피해(제조·관광업), 공동체피해(문화재, 의료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우려되므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피해자 등의 참여보장

행정안전부는 피해자·피해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수립 시 과거 지원 사례(2019년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2022년 경북·강원 산불 등)보다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설명이며,

이번 산불에 대해서만 피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과거 산불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5)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및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원

11.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1조, 이만희의원안 제22조).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1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 교부금 증액, 지방교부세 가산 2.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례,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 3.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김태선의원안(제21조)과 이만희의원안(제22조)은 국가가 피해지역의 경제재건(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이만희의원안은 특별지원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① 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46] 교부금 증액, 지방교부세 가산, ② 지

방소멸대응기금 특례,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47] ③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48]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49]에 대한 금융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지원	국가가 피해지역의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	국가가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 1.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 교부금 증액, 지방교부세 가산 2.지방소멸대응기금 특례,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 3.피해지역 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46) 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는 “13. 특별회계 설치”에서 검토함.

47)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에 대하여는 “12.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등”에서 검토함.

4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수년간의 인구변화·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지역에 기금을 우선 배분할 경우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피해 및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해당 규정을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만희의원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성격이 다른 특별 지원 방안들을 하나의 호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교부금 증액 및 지방교부세 가산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취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이 아닌 「지방교부세법령」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례와 관련하여, 특정 재난의 피해지역에 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가 기금관리조합을 통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기금의 운영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운영 주체인 시·도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만희의원안과 같이 특별지원방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12.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등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에서 수행되는 법정 정책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복구・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4조・제31조・제57조, 이만희의원안 제22조·제33조·제61조·제63조)

또한, 제정안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시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7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이만희의원안 제6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례,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정 정책사업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사업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제33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재해복구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 7. 「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4. 자부담 비율 완화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4. 자부담 비율 완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의 절차, 범위,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국고보조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국고보조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① 국가는 피해지역에 시행되는 다음 각 호[50]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자연재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복구 및 재건 사업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① 국가는 피해지역에 시행되는 복구 및 재건 사업(제25조에 따른 주택 복구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자연재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복구 및 재건 사업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복구 및 재건 지원 비율을 100퍼센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복구 및 재건 지원 비율을 100퍼센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
③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1.「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호사목에 따른 재해복구 대응 수요산정액 시 가중치 부여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산정 시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제외 3.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연간 기준액의 2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호사목에 따른 재해복구 대응 수요산정액 시 가중치 부여 2.「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산정 시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제외 3.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연간 기준액의 2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①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자부담 비율 완화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때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복구 및 재건사업 시 국고 보조율을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국고 보조율보다 상향하고, 복구 및 재건사업 시 국고 보조율을 자연재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50) 제정안에 다음 각 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구 정리가 필요함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법정 정책사업 우선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국가 및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법정 정책사업 우선지원 시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및 자부담 비율 완화 적용 - ① 지구단위계획 구역사업, ② 도시재생사업, ③ 산림사업 등,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⑤ 재해복구사업, ⑥ 재난대책비 지원사업, ⑦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국가 및 지자체는 법정 정책사업 우선지원 시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및 자부담 비율 완화 적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우선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복구 및 재건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국가는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사업 국고보조율을 자연재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저소득층·취약계층은 100%까지 상향)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51]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

5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52]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사업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상 제정안과 관련된 기준보조율 규정 】

보조사업명	국고보조율(%)
재해 위험지역 정비	▸ 50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 40
조림사업	▸ 장기수(長期樹) : 60 ▸ 큰 나무 : 50
숲 가꾸기	▸ 50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 사업 수행의 근거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5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두 제정안은 법정 정책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복구·재건사업 지원 시 국고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불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복구·재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상향과 관련된 여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보조율을 인상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고보조율 상향과 관련된 입법례 】

법률명	내 용	보조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최대 80%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④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법률명	내 용	보조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대 8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대 8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대 80%

둘째, 제정안에서는 자부담 비율 완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 완화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법정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을 완화시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나 국고보조율 상향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부담 비율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지방교부세 특례

제정안들은 모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항목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항목 산

정 시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을 제외하도록 하며, 특별교부세를 연간 기준액의 20%이상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 특례를 규정하고 해당 특례를 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막대한 복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산불 피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에서 하위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1호와 제2호는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방교부세 특례	특례 항목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재해복구 대응 수요산정액 시 가중치 부여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산정 시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제외 3.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연간 기준액의 2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적용 기간	산불 발생일부로부터 5년간 적용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53]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54]이 있음.

---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자부담 비율 완화

기획재정부는 산불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지역은 광범위하고 특정하기 어려우며, 산불피해와 다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간의 직접적인 비교도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국고보조율 인상 또는 자부담률 완화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보조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② 지방교부세 특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취지 및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 특례는 특별법이 아닌 「지방교부세법령」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3. 특별회계 설치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산림복구·복원·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2조·제56조, 이만희의원안 제22조·제58조·제62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 교부금 증액, 지방교부세 가산
제32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5]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8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62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1.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1. 피해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2.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2.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3. 산림 복구, 복원 및 관리	3. 산림 복구, 복원 및 관리
4.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4.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5.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복구 및 확충	5.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복구 및 확충
6. 산불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6. 산불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7. 그 밖에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에 필요한 사업
④ 특별회계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 재원, 용도 및 운용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이만희의원안
특별회계	설치목적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
	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그 밖의 재원
	용도	피해주민(피해자) 생계·의료·주거 지원, 기반시설 복구, 산림 복구·복원·관리,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문화·스포츠시설 복구·확충 등
	관리주체	미규정(“국가”)
	운용기간	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 국무회의 심의 통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55)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는바, 제정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정안과 같이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별도 재원으로 별도 세출에 충당할 수 있어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지역재건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두 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1][56] 개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57]에서는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또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국가재정법」 제14조[58]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56)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57)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58)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동 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논의 결과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박형수의원안 제32조제3항 및 이만희의원안 제58조제3항에서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산림 회복 및 활용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가 명시되어야 함에도 제정안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관리

---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세입세출예산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59], 「국가회계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60],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의 관리주체가 됨. 그러나 제정안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국가”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기획재정부는 재난복구를 위해 각 부처 재난대책비를 기편성 중이고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요건에 부적합하며, 제정안에서 특별회계 용도로 규정한 사업(피해자 생계지원, 기반시설 복구, 산림복구 등)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59)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60) **「국가회계법」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14.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지원

제정안은 국가가 산불 피해지역의 농지・산림・정주여건 등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 특례 적용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이만희의원안 제23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1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면적 기준 : 3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5만 제곱미터 이상) 2. 투자 기준 : 30억원 이상(기존 50억원 이상) 3. 시설 기준 :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숙박시설 중 2종 이상 포함(기존 3종 이상) ② 피해지역 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2.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평가항목 축소 및 기간 단축) 3.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농지·산림·정주여건 등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 다음 각 호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지·산지 전용허가, 하천정비 권한 등 관련 특례 적용 2. 특별재난지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권한 이양 등 3. 피해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해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는 대형 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 완화, 조성을 위한 조치, 피해주민 참여 보장 및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과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① 농지전용허가 특례

제정안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 간소화 외에 추가적인 농지전용허가 특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복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농지전용허가 특례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농지법」 제34조상 농지전용 허가의 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데 있는 점, 농·어업업인의 생활,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 제도 운영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6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62]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산지전용허가 특례

이만희의원안은 국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 산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만희의원안 제23조제1항제1호).

구분	이만희의원안
산지전용허가 특례	피해지역의 농지·산림·정주여건 등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 산지전용허가 관련 특례 적용

이만희의원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산림에 산지전용허가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대책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61)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62) **「농지법」**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는 이만희의원안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피해지역 내 산림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63]

③ 하천정비 권한 등 관련 특례 적용

제정안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에서 하천정비 권한 등 관련 특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은 보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하천정비는 「하천법」[64]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으로,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지역 내 국가하천 구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지역의 지방하천과 관련한 하천 관리 공사의 권한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만희의원안 제23조는 피해지역의 농림·산림·정주여건 등 조속한 개

6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66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64)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선을 위하여 규제환화 및 권한이양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피해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용하는 입장임.

⑤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박형수의원안 제41조는 관광단지 지정 요건의 면적·투자·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고,

이만희의원안 제23조제1항제3호는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지역의 농지·산림·정주여건 등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박형수의원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65]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총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지역이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65)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관광진흥법」 제58조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별도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⑥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이만희의원안 제28조제1항제4호는 피해지역 특별대책에서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만, 이만희의원안 제66조[66] 및 박형수의원안 제60조[67]에서 중첩 규

66) 제66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절차
②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완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소화 및 규제 유예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간소화 및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60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근거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농지전용허가 특례

농식품부는 현행 농지법상 농·어업업인의 생활,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은 농지 전용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지자체장이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산지전용허가 특례

산림청은 이만희의원안 제56조 및 제66조에서 인허가 의제처리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의 산지전용허가 특례는 별

---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절차

②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완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소화 및 규제 유예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간소화 및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68]

③ 하천정비 권한 등 관련 특례 적용

환경부는 하천정비 권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으로, 산불피해지역의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권한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만희의원안과 같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⑤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소규모 관광단지 포함)에는 토지취득 시 취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피해주민의 참여 및 고용에 대한 보장은 법률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주민의 상생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박형수의원안 제41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68)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56조(산림 투자선도지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제정안에서 별도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69]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신규 공공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법」[70]에 따라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우선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⑥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69)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70)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5.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가 등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등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 내 신속한 주거공급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2조,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12조, 임미애의원안 제20조·제21조·제23조, 이만희의원안 제24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2조(주거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울산·경북·경남 초대형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 2.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금 3. 이주 정착 지원금 4. 교육비 지원금 5. 장례비 지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제공하	제20조(생계지원금 등) ①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계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계지원금: 피해자의 생계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주거지원금 :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보조하는 비용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	제24조(주거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② 주거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주거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거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야 한다. 1. 복구 비용 2. 융자 지원 3. 보증 지원 4. 채무 상환유예 5. 이자 차액 보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지원 ③ (생 략) ④ (생 략) 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가산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선 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피해주민 자녀 중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금액, 지급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신속	용 ② 생계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피해자 금융지원)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4. 교육비 지원금: 피해자녀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장례비 지원금: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비용 ②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가산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선 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주거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거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 등은 피해지역 내 신속한 주거공급을 위하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한 주거공급을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 세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구당 적정 면적 확보 2. 냉난방 성능 확보 3. 냉난방 설비, 주방, 화장실 등 기본 생활시설 구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은 피해주민이 임시거주용으로 사용한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시설(공동 작업장, 농산물 판매장, 주민 복지시설 등) 2. 농어촌 체험시설 또는 관광 숙박시설	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 10. (생 략) 11. 임시주거시설 지원 12. ~ 18. (생 략) 제23조(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23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	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은 피해자가 임시거주용으로 사용한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시설(공동 작업장, 농산물 판매장, 주민 복지시설 등) 2. 농어촌 체험시설 또는 관광 숙박시설 3.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4.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공간 5. 관광·문화·휴양시설 6.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의 규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활용,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3.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4.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공간 5. 관광·문화·휴양시설 6.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전환·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시설의 전환·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일정 수량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주거시	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설의 설치, 활용,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의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 사항[71]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추가로 산불 재난으

71)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1회 지원)은 희생자 가구에 구성원 4인 기준으로 259만원, 구조자 가구에 4인 기준 129만 5000원, 총 약 9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지원금(2029.4.15.까지 발생한 비용 대상)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 총 59,002건, 약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유사한 구조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로 인한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있음.

김태선의원안(제22조)은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원을, 박형수의원안(제11조·제12조)은 생활지원금,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금, 이주 정착 지원금, 교육비 지원금, 장례비 지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의 지원과 임시주거시설의 설치를, 임미애의원안(제20조·제21조·제23조)은 생계지원금, 주거지원금, 의료지원금, 금융지원 및 복구비등의 선지급을, 이만희의원안(제24조)은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 지원금, 장례비 지원금 및 임시주거시설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조기 일상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원금	1.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2.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3.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1.생활지원금 2.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금 3.이주 정착 지원금 4.교육비 지원금 5.장례비 지원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1.생계지원금: 피해자의 생계 보조에 필요한 비용 2.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보조하는 비용 3.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1.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2.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3.의료지원금: 피해자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4.교육비 지원금: 피해자녀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비용 5.장례비 지원금: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비용
금융지원			생계 및 경영안정 자금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	-피해지역 내 신속한 주거공급을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임시주거시설의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용도전환	임시주거시설 지원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복구비 선지급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선지급 가능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계부처 합동 수립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2025. 5. 2.)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조사 결과 피해액을 총 1조 818억원, 피해 복구비를 1조 8,809억원으로 확정하고, 금번 산불 피해에 한정하여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복구비 등의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총 2,996동의 임시조립주택(임시주거시설)의 설치를 추진 중이므로,

제정안들의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그 기능 및 효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복구계획의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72)]

---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중점 지원사항

① **주택 피해 이재민 지원**('22년 경북·강원 산불 지원 사례 이상의 수준)

구분	주택 전파	주택 반파
금회	**80~96백** (면적별 20~36+추가지원 **60**)	**40~48백** (면적별 10~18+추가지원 **30**)
'22년	**38백** (16+추가지원 **22**)	**19백** (8+추가지원 **11**)

* 기부금 배분액을 더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가능**(모집기관과 협의 예정)

②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

* 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③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및 일상회복지원 시설사업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원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백만원→10백만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 지원금

김태선의원안(제22조제2항)과 이만희의원안(제24조제3항)은 주거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칙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73]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임.

다음으로,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 가산 및 우선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

3.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김태선의원안 제3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만희의원안 제73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형수의원안은 피해주민 자녀 중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태선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주거지원금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74]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모두 상대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원을 수행하는 주체를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은 '국가'로,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대형산불의 발생을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으나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금융지원

<총 괄>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는

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것인데, 같은 조 제3항[75] 등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 제2항에서는 피해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각 호의 금융지원 제공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문 구조상으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시 당사자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2항의 금융지원 제공 요건을 구체화하고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임미애의원안 제21조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주체를 '국가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 모두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등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법 및 맥락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1조 각 호의 기관별 신용보증 업무 수행 근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75) 제11조(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76]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용보증

---

7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편, 임미애의원안 제21조는 신용보증 대상을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미애의원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의는 '초대형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므로, 소기업·중소기업 등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신용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나아가 안 제21조는 특정 사업의 영위 여부를 묻지 않고 개인의 가계생활비 등 생계안정 목적 자금에 대하여도 신용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1조 각 호에 규정된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자금 수요에 대한 신용보증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관별 신용보증 대상 비교 】

구 분	신용보증 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등 (농업종사자 개인, 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 등 포함)
신용보증기금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기술보증기금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기업등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보증 이용 중 폐업한 개인 포함)

즉, 해당 기관들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일반근로자 또는 무직자에 대하여도 신용보증을 수행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할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들의 설립 목적 및 업무수행 범위, 기

관별 개인신용정보 분석·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는 국가등으로 하여금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 등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서 이미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 이미 「재난안전법」77)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조정의 방법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등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음.78)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7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마지막으로, 임미애의원안 제21조제1호는 산불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가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신용을 보증해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제정안과 같이 산불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보증 근거를 마련할 경우 이들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우선 신용보증이 가능한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명시한 것과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제21조제1호에서 해당 기금의 위탁운영기관인 '농협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보증의 재원이 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복구비용, 융자지원, 보증지원, 채무상환유예,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 제21조제3호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4호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는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지원사항 중 제1호에 따른 복구비용 지원의 경우,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에 따른 복구비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되므로, 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79]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지원사항 중 융자 지원(제2호), 보증 지원(제3호), 채무 상환유예(제4호), 이자차액 보전(제5호)과 임미애의원안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79) **박형수의원안** 제16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시설·설비·자재 처리 및 복구
3.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지원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 지원의 경우, 기존의 현행법 체계 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지원내용과 유사·중복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지원사항]

<table>
<tr><th>구분</th><th>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항</th></tr>
<tr><td>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채무상환 유예)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
(융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td><td>-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현재도 관련 법률에 따라 기 지원 중
- 특히,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대출한도 상향, 만기연장 등 지원 가능
<table>
<tr><th>구 분</th><th>관련 법령</th></tr>
<tr><td>중소기업융자</td><td>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td></tr>
<tr><td>소상공인융자</td><td>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td></tr>
</table></td></tr>
<tr><td>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1항제3호,

임미애의원안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보증 지원)</td><td>-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한 보증지원은 현재도 관련 법률에 따라 기 지원 중
- 특히,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보증요율 및 비율 우대 등 지원 가능
<table>
<tr><th>구 분</th><th>관련 법령</th></tr>
<tr><td>기술보증</td><td>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td></tr>
<tr><td>지역신용보증</td><td>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내용</th></tr>
<tr><td>기술보증
(재해특례보증)</td><td>▪ 지원대상(재해 확인증 발급 중소기업), 보증한도(최대 3억원), 보증요율(0.5%, 특별재난지역 0.1%), 보증비율(85%~→90%고정)</td></tr>
<tr><td>지역신용보증
(특별재해특례보증)</td><td>▪ 지원대상(재해 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보증한도(최대 3억원), 보증요율(0.1%, 특별재해), 보증비율(85%~→100%고정)</td></tr>
</table>
⇒「재난안전법」등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미 지원*
* 지원실적('25.5.9 기준) : (기보) 7건/.16.9억, (지신보) 105건/208.5억</td></tr>
</table>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항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1항제5호 (이자 차액 보전)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 (이자 감면)	- 중앙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보증지원 시 “재해기업특례융자” 및 ”재해특례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기존 대비 저금리를 적용 → “이자 차액 보전”과 유사한 효과 -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등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기 운영 중 * 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박형수의원안에 규정된 이자차액 보전의 경우 기존의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제공된 융자 실시건들에 대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제공하기 위해 그 금리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의 지원도 포함하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하고 있는 재해기업특례융자 및 재해특례보증과 지원방식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박형수의원안에 규정된 채무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기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융자 사업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동 제정안의 채무상환 유예는 정부의 정책융자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 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지원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지원내용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박형수의원안 및 임미애의원안과 같이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과 실익이 부정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셋째,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3항은 제2항의 지원 내용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80]는 60일 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지원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항들에 대해서도 동 제정안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 결정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지원체계와의 유사·중복 운영뿐만 아니라, 수급자 입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 주거시설은 피해주민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 중 하나로서,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

80) **박형수의원안** 제6조(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①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피해주민 인정 및 유형 결정
3. 지원금 및 사업 지원 범위와 기준 설정
4.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계획의 적정성 심의
5. 피해유형별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6.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7.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심의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로 현재도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시설에서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주민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 이재민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거지원 제도 개요

○ 재해로 주택을 상실한 이재민 대상 ①**긴급피난처**(행안부), ②**임시거주시설**(행안부), ③**긴급주택**(국토부), ④**재건·복구**(행안부, 국토부) **지원**

* 지자체장은 인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임시 보호소 제공 및 긴급 구호물품 지원

긴급피난처 (재난 발생 직후) * 체육관, 주민센터 등	파손小 ↗	**임시거주시설** (행안부)	○(**대상자**) 1년 이내 단기 거주 필요 or 현 주거지 거주 희망자 ○(**공급주택**) 임시조립주택, 공공기관 연수원
	파손大 ↘	**긴급지원주택** (우리부)	○(**대상자**) 1년 이상 장기 거주 필요 & 근거리 이주 가능 ○(**공급주택**) LH 공공임대 주택 입주

□ 긴급지원주택 지원 (국토교부 주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의3)

○ **(개 요)** 이재민 대상 **LH임대주택**(공가)을 **즉시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간 무상 제공**(LH 50%, 지자체 50% 부담)

○ **(대상주택)**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등) 및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지원대상)**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조건)** 2년간 **보증금 면제**, **임대료 무상**(LH 50%, 지자체 50%)

○ **(공급절차)** 지자체가 LH에 지원을 요청하면, LH는 공급가능주택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긴급지원주택 사용조건** 등을 지자체와 협의

지원 요청	➠	공급가능 주택 파악	➠	사용조건 및 운영방안 협의	➠	계약체결 및 입주
지자체		L H		LH - 지자체		L H

박형수의원안(제12조제3항)과 이만희의원안(제24조제7항)은 피해주민이 임시거주용으로 사용한 임시주거시설을 관광 숙박시설이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공간, 관광·문화·휴양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유지 비용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박형수의원안 제12조제3항제2호 및 이만희의원안 제24조제7항제2호 중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81]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82]에 따른 '숙박업'의 하위 분류인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또는 두 업종을 모두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추후 관광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사전에 고려하기 곤란하므로, 피해자들이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후 용도를 변경할 때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8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지원금

행정안전부는 주거지원금(주거보조 비용), 생활지원금(생활보조 비용), 교육비 지원금, 장례비 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현행 「재난안전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주거비, 교육비,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각종 지원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과거 지원 사례보다 큰 폭으로 상향하였다는 이유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현금 지원은 산불 대응 및 지원 총괄부처가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기초생활보장 특례에 관해서는 유사 입법례에서 규정한 재난 특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83] 등 유사 입법

---

8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

례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하여 특례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법」에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신설보다 기존법 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84]

②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으로 ①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② 수출지원금융자금 및 ③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을 규정하고 있어[85]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우선순위와 상충

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4) 「재난안전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복구와 피해주민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9. 생략

8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내용 중 '우선적으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이미 「재난안전법」[86]에 따라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농림수산업 분야 신용보증 주체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박형수의원안 제11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같은 제정안 제16조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외 박형수의원안 및 임미애의원안에 규정된 금융 및 보증 관련 지원사항들의 경우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미 지원이 가능하므로 중복 입법에 해당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임시주거시설 지원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상 재해로 주택을 상실한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긴급지원주택을 지원 중이므로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LH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구조로, 국고보조 시 재원상 한계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또한,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도,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현행 「재해구호법」 제4조의2[87]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88]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지자체 소유 임시주거시설을 미리 해당시설의 기관장(책임자)과 협의해 지정해두고 재난 시 제공하고 있으며, 구호기관(지방자치단체)은 자체적으로 또는 구호지원기관(재해구호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제공하고 있고, 국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비(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 내에서 이미 지원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87)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88)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임시주거시설의 용도 전환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임시주거시설이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이를 명확화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임시주거시설은 용도 전환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며 허용용도 완화 규정을 두고자 하는 점을 볼 때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판단되며, 건축물 특성 상 장기간 입지하는 경우 인근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를 둘만한 긴급성·당위성 등의 사유가 부족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6.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 등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등을 위하여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의 특례, 복구 및 재건 사업의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선의원안 제23조, 박형수의원안 제14조·제24조, 임미애의원안 제22조, 이만희의원안 제25조제1항·제2항).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3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담률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수리의 기준 및 국고 지원의 부담률 등 주택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시설(무허가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복구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2. 마을 복구 및 공동 인프라 재건 3. 농림어업 재건 및 생산 기반 회복 4. 공동주택단지 조성 5. 사회복지·문화·생활기반시설, 의료기관 복구 6.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복합시설 설치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	제25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초대형 산불재난 발생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무허가건축물 포함)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담률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수리의 기준 및 국고 지원의 부담률 등 주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7. 산업단지 및 공장 복구 및 경쟁력 강화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물 복구 및 재건 사업 9. 에너지 시설 복구 및 재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구 및 재건사업 ② 제1항 제1호의 주거시설 복구 지원액은 기존 주거시설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지역 특성과 미래 발전을 고려한 개선형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주거 설계 2.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및 환경친화적 설계 3.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 설계	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초대형산불 발생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무허가건축물 포함한다)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의 지원 7.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8. 생산·영업시설 및 장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장비의 복구	택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산업 연계 5. 지역산업 활력 증진과 경제발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비영리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용을 공공시설에 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주체"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위한 지원 9.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11. 임시주거시설 지원 12.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13. 산불로 인해 주기능을 상실한 건물의 철거비 지원 14. 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비용 지원 15.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 사망자 지원 16. 심리상담 등의 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17. 지역경제 회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1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 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① 총괄

김태선의원안(제23조)과 이만희의원안(제25조제1항·제2항)은 피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박형수의원안(제1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지역에 주거시설 복구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마을 복구 및 공동 인프라 재건 등의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주거시설 복구 지원액은 기존 주거시설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의 원칙으로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지역 특성과 미래 발전을 고려한 개선형 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제22조)은 피해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학자금 면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 지원, 국세·지방세 및 통신·전기요금 등 감면, 생산·영업시설 및 장비 피해 복구비 지원, 임시주거시설,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국고 부담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주거시설 복구 지원 특례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복구비에 대하여 국고 70% 지원	주거시설 복구 지원액은 기존 주거시설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	국고 부담비율은 70% 이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 부담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피해지역 복구·재건 사업 대상 (피해지역 지원 특례 대상)	-	1.주거시설(무허가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복구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2.마을 복구 및 공동 인프라 재건 3.농림어업 재건 및 생산 기반 회복 4.공동주택단지 조성 5.사회복지·문화·생활기반시설, 의료기관 복구 6.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복합시설 설치 7.산업단지 및 공장 복구 및 경쟁력 강화 8.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물 복구 및 재건 사업 9.에너지 시설 복구 및 재건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구 및 재건사업	1.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주거용 건축물(무허가건축물 포함) 복구비 지원 3.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금융지원 5.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의 지원 7.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8.생산·영업시설 및 장비 복구 9.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10.전통사찰과 등록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의 피해 복구사업비 11.임시주거시설	-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12.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13. 주거능을 상실한 건물의 철거비 14.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비용 지원 15.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16. 심리상담 및 심뇌적증상,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17.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18.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제정안들은 현행법령 체계에 따른 지원으로는 피해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로부터 원활하게 일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의 복구비를 비롯한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의 국고 부담 비율을 70%이상으로 하거나 주거시설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 지원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2025. 5. 2.)에 따른 정부의 주요 지원 상황을 살펴

보면,

주택의 복구비와 관련하여 국비 지원 상한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로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 추가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최소 1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총 2,996동의 임시조립주택(임시주거시설)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음.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89]과 산림작물[90]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가축 폐사에 따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 비용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그 밖에 농기계 등 장비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하였고, 산불 피해로 주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 분에서 작물에 따라 최대 11개월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안정지원금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및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의 정책 추진을 병행할 예정임.

89) 농작물 6종: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90) 산림작물 8종: 밤, 고사리, 조경수, 두릅, 호두, 약용류, 더덕, 떫은감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될 예정임.

산불 피해가 있었던 공공시설 767개소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및 하천, 수리시설 등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신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은 올해에는 피해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설계를 비롯한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한 후 2026년부터 복구공사를 진행할 계획임.

▌중점 지원사항▐

① **주택 피해 이재민 지원**('22년 경북·강원 산불 지원 사례 이상의 수준)

구분	주택 전파	주택 반파
금회	**80~96백** (면적별 20~36+추가지원 **60**)	**40~48백** (면적별 10~18+추가지원 **30**)
'22년	**38백** (16+추가지원 **22**)	**19백** (8+추가지원 **11**)

* 기부금 배분액을 더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가능**(모집기관과 협의 예정)

②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

* 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③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및 일상회복지원 시설사업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원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백만원→10백만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이와 같이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비롯한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존의 기준을 상향하거나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1조 8,809억원의 복구비 규모를 확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산불 발생 이전으로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안과 같은 특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피해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박형수의원안 제14조제1항제8호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물 복구 및 재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4호),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의 지원(제6호), 시설·장비의 복구비 지원(제8호)을 할 수 있음을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물 복구 및 재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박형수의원안 제14조제1항제8호는 동 제정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

어 있음을 고려할 때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91]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4호),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의 지원(제6호), 시설장비 복구비 지원(제8호)의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바, 현행 법체계와 동일·유사한 사항을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③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복구사업비 지원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10호는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유산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등록문화유산[92]의 경우 지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바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9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91) 박형수의원안 제16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시설·설비·자재 처리 및 복구
3.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9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9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에 따른 천연기념물등[94]과 관련하여 36건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제정안 제22조제10호에서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초)대형산불 관련 국가유산 피해 현황 】

(집계기간 : '25. 3. 21~ 4. 15)

피해 건수	국가지정								시·도지정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민속	등록	계	유형	기념물	자연유산	민속	유산자료	등록
합계	**13**	0	3	0	4	3	3	0	**23**	5	3	0	6	9	0
경북의성	3		3						3	3					
경북안동	3				2	1			12	1	2		5	4	
경북청송	4				1		3		5	1			1	3	
경남산청	0								0						
울산울주	1					1			1					1	
기타지역	2				1	1			2		1			1	

자료 : 국가유산청

---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9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 (생략)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총괄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임.

첫째,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와 관련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복구를 위한 주거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주거비의 경우 국고 부담률을 70%로 하여 과거 지원 사례(2019년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2022년 경북·강원 산불)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행 재난안전법령 체계와 같이 주택 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분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 사업 추진(박형수의원안)과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특례(임미애의원안)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산불 피해에 한정하여 현행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서 지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재난안전법」 제66조의 개정(5.1. 국회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피해 및 경영안정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금번 산불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과 함께 논의 중에 있으므로 특별법에 따른 지원보다는 「재난안전법」 등에 따른 현행 규정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재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으므로 현 지원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으로 현재 체계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95]

②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미애의원안에 명시된 금융지원 및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 기존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정안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8호에 생산·영업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복구비 지원 외에도 발전시설의 복구비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복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신규 지원 내용으로 “산불 피해 입목 등 처리 및 바이오자원화 비용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③ 피해를 입은 시설·장비의 복구를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의 경우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재난지원금

95) 금번 (초)대형산불에 대해 주택복구비 전파 6,000만원 추가지원 기결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산불 피해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에서 제외된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복구사업비 지원

국가유산청은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하여도 국고보조 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박형수의원안 제14조제1항제9호의 ‘재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에너지 시설 복구 및 재건’은 ‘에너지 시설 복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7.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4조, 박형수의원안 제16조, 이만희의원안 제26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4조(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강원 산불[96]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시설·설비·자재 처리 및 복구 2. 원자재 및 제품 손실 보상 3.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융자 5. 영업결손 등에 대한	제26조(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 등은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시설·설비·자재 처리 및 복구 2. 원자재 및 제품 손실 보상 3.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융자 5. 영업결손 등에 대한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보전 6.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7.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8. 업종 전환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저금리 직접융자와 이자차액보전으로 지원하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소요재원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설비 등이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9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전 6. 피해시설물 철거 7.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8.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9. 업종 전환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제4호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저금리 직접융자와 이자차액보전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소요재원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범위,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지원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금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범위,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① 총괄

제정안들은 국가가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 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박형수·이만희의원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목록을 명시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우선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김태선의원안 제24

96)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이해됨

9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필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조, 박형수의원안 제16조, 이만희의원안 제26조).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국가지원	사업장 건축물 등 재산 피해복구 비용 지원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국가 지자체 지원		경영 정상화 지원 - 사업장 복구, 제품 손실보상, 기계·장비·시설 복구, 융자, 기술개발, 마케팅, 결손보전, 업종전환, 고용유지	경영 정상화 지원 - 사업장 복구, 제품 손실보상, 기계·장비·시설 복구, 융자, 기술개발, 마케팅, 결손보전, 업종전환, 피해시설물 철거
절차		신청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위원회 심의로 지급 결정	
피해지역 지정 및 우선지원 부처협조		중기부장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고용부장관 : 고용위기지역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제정안들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이들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여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은 단순 시설 복구비 뿐만 아니라 원자재 및 제품 손실 보상, 경영안정자금융자,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등의 지원도 의무사항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융자지원 시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박형수의원안 제16조제2항, 이만희의원안 제26조제4항), 기존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 이만희의원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들은 산불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산불피해로 직접 발생한 피해의 일차적인 복구뿐만 아니라 이후 원자재 및 제품 손실 보상,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여 산불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제정안들의 취지는 이해되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강행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기존의 유사한 재난피해 지원 사례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원자재 및 제품 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융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 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지출 운용의 탄력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둘째, 박형수의원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신청을 받은 ‘피해복

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98]는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정안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항은 이번 산불피해에 국한되는 신규 복구비, 원자재 및 제품 손실보상,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업종 전환 지원 등 기존의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지원사항 】

<table>
<tr><th>구분</th><th>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항</th></tr>
<tr><td>경영안정자금
융자</td><td>-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현재도 관련 법률에 따라 기 지원 중
- 특히,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대출한도 상향, 만기연장 등 지원 가능
<table><tr><th>구 분</th><th>관련 법령</th></tr><tr><td>중소기업융자</td><td>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td></tr><tr><td>소상공인융자</td><td>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td></tr></table></td></tr>
</table>

98) **박형수의원안** 제6조(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①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피해주민 인정 및 유형 결정
3. 지원금 및 사업 지원 범위와 기준 설정
4.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계획의 적정성 심의
5. 피해유형별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6.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7.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심의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table>
<tr><th>구분</th><th>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항</th></tr>
<tr><td>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td><td>- 기술개발·마케팅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술·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개별 사업들을 통해 기 지원 중
<table><tr><th>구 분</th><th>관련 법령</th></tr><tr><td>「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td><td>제1조(목적) 이 법은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td></tr><tr><td>「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td><td>제1조(목적) 이 법은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td></tr></table></td></tr>
<tr><td>업종 전환 지원</td><td>-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한 업종전환 지원은 현재도 관련 법률에 따라 기 지원 중
<table><tr><th>구 분</th><th>관련 법령</th></tr><tr><td>중소기업
업종전환지원</td><td>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목적)</td></tr><tr><td>소상공인
재창업지원</td><td>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td></tr></table></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기존 정부 수행사업들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심의·결정 주체를 동 제정안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지원체계와의 유사·중복 운영뿐만 아니라, 수급자 입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있음.

② 피해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9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00)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10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라

---

99)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2025.5.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2023.1.1.~2024.6.30.까지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지원 대상이 된 바 있었음(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101)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실익이 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총괄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복구에 관한 비용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닌 산불피해에 대해서 제품 및 원자재 손실 보상,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임.

또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업종전환 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 체계를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이므로 제정안에 이를 중복하여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혼란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102)]

---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4.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② ~ ⑤ (생 략)

102) 다만, 제정안들은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 대책 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법」으로 규정된 기준 및 절차 등을 근거로도 지정이 가능하므로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② 피해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의 피해지역 중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해당 법령을 근거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특정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련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는 등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를 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8. 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17조, 이만희의원안 제27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7조(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공장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103]의 복구 2.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3. 입주기업 공동 물류·유통 지원 사업 4. 산업단지 및 공단 내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 5. 스마트 및 안전 인프라 조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 및 공장의 복구 과정에서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공장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2.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3. 입주기업 공동 물류·유통 지원 사업 4. 산업단지 및 공단 내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 5. 스마트 및 안전 인프라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 및 공장의 복구 과정에서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의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특구지역 국고보조 등의 복구지원) ① 피해지역 내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된 민간기업 시설에 대한 재난피해 시 국고지원을 통한 복구를 포함한다.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형산불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 제17조제1항, 이만희의원안 제2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공장의 기능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04]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복구, 입주기업 공동 물류·유통 지원사업 등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가로, 박형수의원안 제18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규제자유특구 내 기반 시설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만희의원안 제27조제4항은 “중소기업의 영업결손에 대한 경

103) “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자구정리 필요

10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적 지원 및 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복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지원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영업결손에 대한 지원은 그간 유사한 규모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사례를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정지원 사항을 의무지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의 탄력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찬가지로, 박형수의원안 제18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특구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타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사례와의 형평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탄력성 및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제정안들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만희의원안 제27조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박형수의원안 제18조제1항과 관련하여 실제 지원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한 임의 규정으로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9. 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해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지원을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15조, 이만희의원안 제28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5조(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과수원, 시설하우스, 어선, 양식장 등 생산기반 복구 지원 2. 농림어업용 기계·장비 지원 3. 농림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4. 대체수종, 대체작물 재배 및 양식업 전환 지원	제28조(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 복구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농업·임업·수산업에 대한 시설·장비(농기계 등) 및 작물(임산물 등 채취 작물을 포함한다)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농림어업인에 대한 임지, 농경지, 과수원 등 생산기반 복구 지원 2. 농림어업용 기계·장비·어선·어구·양식시설 지원 3. 농림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4. 대체수종, 대체작물 재배 및 양식업 전환 지원 5. 피해 어가 중 어선어업에 대한 특별 감척 지원 6. 농어업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률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1. 해제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지사 2. 해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시장·군수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임업인의 경영임지 및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비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시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임업인을 우선 선정하며, 보조 비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 경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① 농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

제정안은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및 지원이 현행법 규정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지역의

농업 분야 피해 관련 복구 및 재건과 특별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제정안에 따라 농경지, 과수원, 시설하우스 등과 농업기계 및 장비,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의 복구, 대체 작물 재배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형수의원안(제15조제3항)과 이만희의원안(제28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산불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으므로 피해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라는 제정안 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에 보다 부합해 보임.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불피해 복구와는 무관하므로 「농어촌재해대책법」 제4조를 배제하는 문구를 둘 실익은 없다 할 것임.

둘째, 박형수의원안(제15조제4항)과 이만희의원안(제28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28조제1항[105]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용 가능한 행위가 법률로서 제한[106]되어 있음.

「농지법」 제30조[107]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시·도

105)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6)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후 략>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07)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후 략>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은 「농지법」 제31조[108]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1ha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현행법에 동 조항을 두고 있는 취지는 우리나라 적정 식량자급률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임.

반면, 제정안은 산불 피해지역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전면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08)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10년간(2014~2023) 농지면적이 19만 9,000ha 감소(△13.2%)하는 중에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역시 4만 2,000ha 감소(△5.4%)하는 등 우량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 등 감소 추이]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농지면적(천ha)	1,691	1,679	1,644	1,621	1,596	1,581	1,565	1,546	1,528	1,512
■ 농업진흥지역(천ha)	1,036	1,036	994	988	987	986	987	986	986	986
- 진흥구역	927	927	862	849	842	840	841	840	840	840
- 보호구역	109	109	132	139	145	146	146	146	146	146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천ha)	811	810	780	777	778	776	776	773	769	766
- 진흥구역 농지	755	754	705	700	698	696	696	693	690	687
- 보호구역 농지	56	56	75	77	80	80	80	80	79	7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결론적으로 산불 피해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의 전면 위임은 국가 차원에서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임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은 나아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임업인의 경영임지 보험가입을 지원하며, 임

산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만희의원안 제28조제4항).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임업 피해 복구 특별지원	대형산불 피해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전문임업인 경영임지 보험가입 지원 피해지역 임업인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시 피해지역 임업인 우선 선정, 보조 비율 80%로 상향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현재 임산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 포함되어 임산물 8개 품목[109]에 대해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국가 50%, 지자체 약 30%, 자부담 약 20%로 부담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보조사업(국고보조율: 공모사업 40%, 소액사업 20%)을 추진 중에 있음.

박형수의원안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에게 재해보험 가입 지원, 임산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시 우선 선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110]

109) 감, 밤, 대추, 표고, 오미자, 복분자, 호두, 두릅

110) 피해지역의 사유림 경영계획 인가면적은 56,705ha이며, 이 중 산불피해를 입은 산지의 경영계획 인가면적은 11,020ha(19.4%)에 해당함.

다만, 피해지역 임업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임지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의 대상을 전문임업인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박형수의원안 제15조제3항 및 이만희의원안 제28조제4항의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대상을 “농어업인”에서 박형수의원안 제15조제1항 및 이만희의원안 제28조제3항과 같이 “농림어업인”으로 수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수산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

박형수의원안(제15조제1항제2호・제3호)과 이만희의원안(제28조제3항제2호・제3호) 모두 어선, 양식장 등 생산기반 복구, 기계장비 지원, 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만희의원안(제28조제1항)은 이에 더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생산기반 및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만희의원안의 국비 전액 부담 규정의 경우 피해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재정 및 타 재난과의 형평성 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기획재정부는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지원이 착수 중이고 이만희의원안 제28조제3항 각 호는 「재난안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바,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법 체계 충돌 및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① 농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해 농경지,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업기계와 장비, 농림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대체 수종, 대체 작물 재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는 우량농지 감소와 난개발 방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임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임업인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도모하

려는 박형수의원안에 동의하나, 경영임지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박형수의원안 제15조제5항)은 전문임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③ 수산업 피해 복구 및 특별지원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공동법률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 관광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19조).

박형수의원안
제19조(관광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① 대형산불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자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초과 피해 범위에 한하여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조건 및 절차는 이 법 제14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대형산불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박형수의원안 제19조),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재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박형수의원안
관광사업자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다만, 박형수의원안 제19조제2항에서 초과 피해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 피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로 수

정하고, 피해액을 초과하는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액 산정범위에 제14조의 지원금 외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모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등 또는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소관 부처[111]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소관 부처의 종합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제정안의 관광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등의 방안을 통해 가능하므로,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112]

111)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112) 박형수의원안 제19조 조제목 '재난지원금 지원' → '금융 지원'
제1항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지원'
제2항 및 제3항 삭제

21.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 지원 및 장애인 긴급돌봄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초)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5조, 임미애의원안 제25조, 이만희의원안 제29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5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제20조(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급돌봄센터를 1회 이용 시 30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돌	제25조(「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봄서비스의 이용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급돌봄센터를 1회 이용 시 30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113]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11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의 자녀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114]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 지원	①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용	73만500원/월(1인 기준) 187만2,700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만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만2,500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2,000원/월 이내(1인 기준) 149만4,100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②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초 12만7,900원/분기 중 18만 원/분기 고 21만4,000원/분기	4회
		기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11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③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제한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

ㅇ **(목적)**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ㅇ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연간 2,400시간) 지원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건강, 영양, 위생, 교육)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연간 960시간 지원
  * 학교 ·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 간식 챙겨주기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형~마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아(0~2세) 돌봄 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 추가지급
ㅇ **('25년 요금/시간)** 12,180원

*자료 : 여성가족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규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115]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11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없어 보임.

다만,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116]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센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언급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117]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및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으로서 명시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 또는 '긴급돌봄센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 발달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6.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하여도 긴급돌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다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하여는 이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를 근거로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지침에서 규정된 기준[118]을 벗어나 예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구조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제정법안의 입법취지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118) 예컨대, (이용기간) 1회 최대 7일, 1년 30일 이내, (이용사유)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등을 들 수 있음.

22.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 등으로 하여금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6조, 박형수의원안 제61조, 임미애의원안 제26조, 이만희의원안 제30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6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 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금융지원 및 협조 요청) ① 국가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조정, 상환유예, 금리우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 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국가 등에게 요청 권한만 부여하는 안과 요청을 받은 기관에게 적절한 금융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안으로

구분되나, 공통적으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 및 생업 기반이 약화되어 채무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구제와 관련된 다수의 입법례[119]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다만, 박형수의원안의 경우 금융 관련 협조요청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종 채무조정지원, 재무관리 및 교육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120]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협조요청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11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25. 6. 30. 시행예정)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다수

23. 출입국 특례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2조, 임미애의원안 제24조, 이만희의원안 제31조).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사증 발급절차 2. 체류자격의 변경 3. 체류기간의 연장 ③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사증 발급절차 2. 체류자격의 변경 3. 체류기간의 연장 ③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나. 검토의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는 사증 및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는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체류기간의 연장 허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121]

제정안(박형수·임미애·이만희의원안)은 법무부장관이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의 연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등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121)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특별재난지역[122] 체류 외국인 현황 】

(단위: 명, 2025. 2.월말 기준)

구분	계	울산	경남		경북				
		울주군	하동군	산청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체류외국인	18,578	11,448	968	1,148	1406	2,139	253	318	898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5. 3. 31.)

아울러, 박형수의원안·이만희의원안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지역의 농가 등이 산불 피해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고용할 수 없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지역재건, 지역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23]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일부 산업특구지역에 마련된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된 것이나, 제정안은 피해구제를 위한 잠정적·임시적 시혜 조치로서 재

122) 2025년 3월 31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123)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를 두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난 발생 시마다 특례를 규정할 경우 차후 타 법률에 특례가 남발되어 국가행정의 통일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기한의 한계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구제를 위한 임시조치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4. 조세감면·납부유예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자와 피해지역 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면제, 납부유예·분할납부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3조, 임미애의원안 제22조, 이만희의원안 제32조).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3조(조세감면 및 납부유예) 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조세감면 및 납부유예) 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지역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감면 또는 면제	7.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1.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감면 또는 면제
2.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		2.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
3. 세금 납부 기한의 3년 이내 연장		3. 세금 납부 기한의 3년 이내 연장
4. 분할납부 허용(최대 3년)		4. 분할납부 허용(최대 3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제 혜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세목 및 감면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세목 및 감면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①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및 창업·투자기업 세제혜택 부여

구분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대상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기업	불특정	피해자와 피해지역 기업
	내용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국세·지방세 경감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창업·투자기업 세제혜택	대상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투자기업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투자기업
	내용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주민(피해자)과 피해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데 반해, 임미애의원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경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경감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해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 또는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세 건의 제정안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면제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창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 특례와 지방세 특례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124]과 「지방세특례제한법」[125]에 따라 실질적인 감면·면제가 이루어지는바,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면제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실제 여러

---

12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 25. (생 략)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126]에서 조세 감면·면제의 근거 규정이 규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 감면·면제을 위해서는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함.

둘째, 제정안에서 세금 감면·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는 정책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서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127] 박형수의원안·이만희의원안과 같이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면제 대상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에서 세금 감면·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지방세의 감면·면제가 되는 근거법률을 제정법에 명시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러 입법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등의 방식으로 듀정하고 있음.

② 세금 납부유예·분할납부 등

구분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대상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기업	불특정	피해자와 피해지역 기업
내용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1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2조(조세의 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등 다수의 법률

127)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등.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주민(피해자)과 피해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데 반해, 임미애의원안은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납부유예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세 건의 제정안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각각 「국세징수법」[128]과 「지방세징수법」[129]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는 납

128) **「국세징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9)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세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규정하는 것만으로 직접 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130]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131]에서는

---

13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13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과 같이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및 창업·투자기업 세제혜택 부여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와 맞지 않고, 감면대상 세목을 규정하는 것을 납세자에 불필요한 오해와 기대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② 세금 납부유예·분할납부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의 형평성 및 집행상 일관성을 고려할 때, 개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별법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두지 않고 「국세징수법」에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세수 및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유예 기간은 현행대로 최대 2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5.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4조, 이만희의원안 제33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정 정책사업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사업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 7. 「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2.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3. 별도 사업 물량 배정 4. 자부담 비율 완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의 절차, 범위,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2.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3. 별도 사업 물량 배정 4. 자부담 비율 완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도시재생사업, 산림사업 등 각종 법정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24조, 이만희의원안 제33조).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법정 정책사업 우선지원	국가·지자체는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도시재생사업, 산림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등 사업 우선 지원 시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등 특례 적용 가능	국가·지자체는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우선 지원

지구단위계획구역[132]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별도의 법정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임.

또한, 「지역개발지원법」 제16조제3항제3호[133]의 경우에도 지역개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3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③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규정으로 별도의 법정 정책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원 규정은 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도시재생사업 우선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상 도시재생사업[134]은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제정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도시재생법」 상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부분이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원의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4월 「도시재생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재생사업[135]이 도입되었는데, 특별재생사업은 재난 피해를

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정 정책사업 특례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도시재생법」 상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③ 산림사업 및 산림경영계획사업 우선 지원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과 법정 정책사업을 명시하지

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③ 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2.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 지역 자연경관·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

않는 안으로 구분됨(박형수의원안 제24조제1항제3호, 이만희의원안 제33조제1항).

박형수의원안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원 시 피해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조속한 회복 및 재건 방안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④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의 우선 지원

박형수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136]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138] 등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정 정책사업을 이번 산불 피해지역

1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7)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제정안은 법정 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시 국고보조율 상향, 별도 사업 물량 배정, 자부담 비율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④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의 우선 지원

박형수의원안은 양식산업 등 다양한 법정 정책사업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복구사업 외에도 주요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선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피해복구 속도와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각 법령 및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 내에서 기존 체계와의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

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우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박형수의원안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법」 제16조제3항제3호는 현행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사항도 협의한 경우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당 내용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는 산불, 지진 등 광역적 피해를 입은 재난선포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생사업이 이미 도입되어 있어 현행법 상 특별재생사업으로도 통해 대규모 재해지역에 우선적 지원이 가능한바, 별도 규정 신설은 제도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산림사업 및 산림경영계획사업 우선 지원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39]는 산

1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

림사업대행에 관한 조항으로 정책사업 우선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은 제22조만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임.

④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의 우선 지원

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우선지원)과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정 재난을 입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와는 다른 면이 있고,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단위 복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과 특별재생구역 지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므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중복 추진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임.

26. 심리상담・문화예술활동・치료・의료 등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유,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의료와 관련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7조 및 제28조, 박형수의원안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임미애의원안 제22조, 이만희의원안 제34조 및 제35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심리치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심리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보건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연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16. 심리상담 등의 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28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강원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에 대한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 2. 지역 의료기관 피해복구 및 기능강화 지원 3. 이동식 의료시설 및 장비 지원 4.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		제3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심리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보건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연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수가적용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문화·생활기반시설, 의료기관 복구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등에 관한 지원 의무를 마련하고 있는데, (초)대형산불의 발생과 피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심리상담	국가 등의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국가등은 심리상담 등의 지원	(김태선의원안과 같음)
심리치유 지원		국가·지자체는 피해주민 심리치유 등을 위해 심리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음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심리증상 정신질환 검사치료	국가는 피해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를 지원		국가등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를 지원	국가는 피해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를 지원
의료지원		①국가·지자체는 피해주민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피해복구 지원, 이동식 의료 및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시행, ②의료취약계층 우선지원, ③복지부장관은 피해지역 의료기관에 시설·인력기준, 수가적용 등에 특례 적용		
피해지역 지원		국가·지자체는 피해지역에 사회복지·문화·생활기반시설, 의료기관 복구 사업을 시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40]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원의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은 '국가'로,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대형산불의 발생을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으나 「재난안전법」 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4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박형수의원안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의료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은 '무상'의 의미를 전액 무료로 해석할 때 다른 재난 및 사고 피해자의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2호 지역 의료기관 피해복구 및 기능강화 지원은 의료기관이 정상화되어야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3호 이동식 의료시설 및 장비 지원은 인명피해의 규모와 중증도, 인근 의료기관 병상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지원 의무화 대상으로 두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4호 원격의료서비스의 경우 '원격의료'는 「의료법」[141]에 따르면 의사와 원격지에 있는 다른 의료진 사이의 의료지원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입법취지가 의사와 의료기관 외부의 환자 사이[142]의 지원을 의도한

---

141)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42) '비대면 진료'의 개념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것은 아닌지를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보건복지부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등의 지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다만, 박형수의원안의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 의료기관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재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지역 의료기관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의 자율 지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기존 재정 지원 체계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적 지원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27. 근로자의 치유휴직 및 국가의 휴직비용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6개월 이내의 치유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으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29조·제30조 및 이만희의원안 제36조·제37조).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9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3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제3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6개월 이내의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휴직으로 인한 고용유지비용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초)대형산불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를 지원하고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치유휴직	신청기한	법 시행 후 1년 이내	
	휴직기한	6개월 이내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	불가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치유휴직 지원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43]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

14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법」[144]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치유휴직 제도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피해자 확인 및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초대형 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고용보험법령[145] 상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용어와 개정안의

---

14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5) **「고용보험법」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

‘고용유지비용’이 유사하여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비용’을 지원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28. 공동체 회복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가 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김태선 의원안 제31조·제32조, 이만희의원안 제38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지구 조성) ① 피해지역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김태선의원안 제31조), 피해지역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김태선의원안 제32조, 이만희의원안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하려는 것으로, 피해지역 공동체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목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	-
	비용	피해자 참여 시 국가등이 비용 지원 가능	
	기타	프로그램 개발 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기능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 서비스 제공	
	방문 서비스	-	필요 시 제공
	협의 대상	국가	
	국가 지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유사 입법례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146]

14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토닥토닥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릴레이 간담회 등 12개 프로그램(25개 사업)을 시작으로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상담·조언 등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었고, 안산시 단원구에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치유, 소통·화합을 도모하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 2024년 8월 착공된 바 있음.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 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이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공감하나,

피해주민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해당지역에 대한 적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특별법안(김태선의원안 제31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9. 공동주택단지 조성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지방소멸과 마을 소멸 방지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 임미애의원안 제22조, 이만희의원안 제25조).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4조(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단지 조성		
제25조(공동주택단지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방소멸과 마을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특성 반영 2.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3. 친환경적 설계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확보 4.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 시설 설치		제25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지방소멸과 마을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특성 반영 2.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3. 친환경적 설계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확보 4.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 시설 설치 ⑤ 공동주택단지 조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③ 공동주택단지 조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2.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적용(기준의 1.5배 이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주택을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조성을 통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토지수용,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⑦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2.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적용(기준의 1.5배 이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세부적인 조성 방법, 규모,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세부적인 조성 방법, 규모,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동주택단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나. 검토의견

① 공동주택단지 조성 근거 마련

박형수의원안(제25조제1항・제2항)과 이만희의원안(제25조제3항・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임미애의원안(제22조제1항)의 경우 산불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근거규정	지원사업 중 하나로 규정+별도 조항 마련	지원사업 중 하나로 규정	별도 조항 마련
조성 시 고려사항	1. 피해주민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특성 반영 2.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3. 친환경적 설계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확보 4.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 시설 설치		1. 피해주민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특성 반영 2.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3. 친환경적 설계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확보 4.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 시설 설치

공동주택단지는 산불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피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박형수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고려사항 및 특례 등을 규정하되 필요 시 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상당수가 농촌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은 거주기간 및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피해주민의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② 공동주택단지 건축특례

박형수의원안(제25조제3항)과 이만희의원안(제24조제5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허용 특례 및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건축특례	1.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2.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적용(기준의 1.5배 이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박형수 의원안과 같음)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147]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으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데,

피해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건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중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148]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정

1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한도를 1.5배로 상향하는 것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의 낮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다만, 관리지역[149]의 경우 자연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공동주택단지 건

1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1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축에 한하여 예외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의 목적 및 피해주민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공동주택단지 조성 관련 준용규정

박형수의원안(제25조제6항・제7항)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토지수용,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23조[150]의 절차를,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7조[151]를 준용하도록 규정

15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1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준용규정	입지선정, 토지수용, 인허가 사항 → 「지역개발지원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입지법」

이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정권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토지수용 절차는 「지역개발지원법」, 인·허가 절차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박형수의원안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기존의 개발사업 절차에 준하여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이나 거점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절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에 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산불 피해지역 내 마을 단위 규모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그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사업 승인 절차나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산불피해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강제적인 토지수용 절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차를 마련할 경우 오히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전반적인 사업 절차에 있어 사업의 규모 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사항만 별도로 제정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④ 공동주택단지 조성 비용 지원

박형수의원안(제26조), 임미애의원안(제22조제1항제12호) 및 이만희의원안(제25조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단지의 조성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원규모의 경우 박형수의원안은 전부 또는 일부, 임미애의원안은 국고 부담비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 이만희의원안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박형수의원안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원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규모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국고 100분의 70 이상 (저소득층,취약계층 전액)	시행령 위임
기반시설 지원	공동주택단지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 비용 지원		

공동주택단지 조성 비용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주거 보장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 규모의 경

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 규모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필요 시 박형수의원안과 같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임.

박형수의원안의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함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됨.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공동주택단지 조성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역의 소멸 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주택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공동주택단지의 정의와 조성 주체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은 주택법령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므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불 피해지역의 취락 형태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건단지” 등 별개의 명칭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공동주택단지 건축특례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역 복구 및 신속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반시설 계획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완화 대신 용도지역별 기준

의 1.2배 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공동주택단지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무분별한 입지는 기반시설 용량 초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허용용도 특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③ 공동주택단지 조성 관련 준용규정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 국토정책위원회를 거치고 있어 해당 절차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승인 및 인·허가 절차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취락 재건을 위한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제정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④ 공동주택단지 조성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시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해당법령 상 공공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152], 기반시설

15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설치 지원과 관련한 사항[153] 또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박형수의원안 유지 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지역개발사업 협의 대상 제외

환경부는 박형수의원안 제25조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지역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154]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55] 및 「오

---

153) **「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5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156]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제정안은 사업 추진 이전에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산불 피해지역의 시급한 복구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량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157]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임.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156)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157)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지역개발사업 협의)** ①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나목 지역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은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개요
2. 배출부하량 산정내역
3. 삭감계획
4. 할당내역(시행청 할당문서 포함)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호, 제2호가목 및 제4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및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협의 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며 자료보완, 기술검토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박형수의원안 제26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법」[158]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신규 공공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법」[159]에 따라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우선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5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59)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0.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인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피해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조 및 제28조, 이만희의원안 제2조 및 제38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화된 도시 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제28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 구역의 지정 2. 생활권 기반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3. 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4. 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제38조(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지구 조성) ⑤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 구역의 지정 2. 생활권 기반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3. 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4. 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있다.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복합기능 집적지구는 주거기능과 더불어 상업기능,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하여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로서, 피해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상당수가 농촌 지역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피해지역을 재배치하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그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2024년 2월 6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복합용도구역[160]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밀도 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이 가능한 상

1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상업·산업·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2.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복합용도계획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

황으로 필요 시 현행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역 재건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토계획법」 상 고밀복합 개발을 지원하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구역 등 실제 지정 효과가 있는 제도 활용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군기본계획[161]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군기본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구분	**복합기능 집적지구** (제정안)	**복합용도지구** (국토계획법)	**복합용도구역** (국토계획법)
정의 · 지정 요건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지정요건> •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실제 지정 효과	미정	건축물 용도 완화	건축물 용도 완화 건축물 밀도 완화

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1. 추모사업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산불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비의 건립, 재난 피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9조·제30조, 이만희의원안 제39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9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재난 피난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모공원 및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주요 참사 현장 인근으로 하되, 지역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재난 피난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모공원 및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주요 참사 현장 인근으로 하되, 지역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0조(추모시설 설치 지원) ① 국가는 제29조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가 정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과거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62]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163] 의 관련 규정과 유사하며, 추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산불로 안타

16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깝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피해주민들의 심리적 회복 및 재난대응 인식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추모사업 등 시행	목적	희생자 추모 및 피해주민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	
	사업 유형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재난피난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국가 지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명칭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위치	피해지역 내 주요 참사 현장 인근으로 하되, 지역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정함	
추모시설 설치지원	인허가	국가는 제29조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164]에 따라 추모사업 등을 추진할 근거가 있어, 필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

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추모시설 설치에 관한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허용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박형수의원안 제30조제1항 및 이만희의원안 제39조제4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배제하는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에 추모사업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존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마. 파손된 주택의 철거
바.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32.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완화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2조).

박형수의원안
제42조(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완화) ①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면적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공립 자연휴양림 : 10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20만 제곱미터 이상) 2. 사립 자연휴양림 : 5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13만 제곱미터 이상) 3. 공립 치유의 숲 : 5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 4. 사립 치유의 숲 : 5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30만 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타당성 평가 적지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자연휴양림 : 75점 이상(기존 100점 이상) 2. 치유의 숲 : 83점 이상(기존 110점 이상) 3. 숲속야영장·산림욕장 등 : 38점 이상(기존 75점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 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산림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휴양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소음 등으로부터 완충녹지(지정면적 기준 약 50%)를 확보한 후 가용지 면적 산출이 필요하므로, 자연휴양림 지정면적을 현행

기준에서 50% 이하로 줄일 경우 실제 건축 등 가용지 면적이 축소되어 휴양림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치유의 숲 조성면적은 최소 20분 이상의 걷기활동을 할 수 있는 숲길과 경관관찰·산림욕·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주변면적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처럼 치유의 숲 지정면적 완화기준(공·사립 치유의 숲 각각 5ha)을 현행 기준의 10~1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용지 면적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연휴양림 등의 기능을 고려할 때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조성면적 기준 완화의 경우, 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 진동발생, 완충구역, 휴양·치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이 선행된 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당성 평가 적지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165]

165) 산림청은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30개 평가항목 150점 중 100점 이상(약 67%), 치유의 숲은 33개 평가항목 165점 중 110점 이상(약 67%)일 때 적지로 판정하나, 현재 적지판정 기준이 높지 않아 제정안이 제시하는 50%까지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33. 에너지 보급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주민의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복지를 위한 우선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3조).

박형수의원안
제43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의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 3. 취약계층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4. LPG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에 대하여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43조).

구분	박형수의원안
에너지 보급 지원	피해주민에 대하여 에너지 보급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 -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 - 취약계층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 LPG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그런데 이 중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에 관한 연구개발(R&D)사업으로,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기보다,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청정화력 분야의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및 핵심기술개발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166]

동 제정안 제4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 제정안의 입법 목적의 관련성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제정안 제43조제1항제3호는 “취약계층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에너지 보급 지원 관련 내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 피해 지역 및 지역주민의 회복 및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16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166)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2024년도 제1차 및 제2차 신재생에너지R&D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참조.

1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34. 체육시설 결정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체육시설 결정 기준과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4조).

박형수의원안
제44조(체육시설 결정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회복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및 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결정기준과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내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기준 2. 피해지역 내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체육시설 부지 면적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결정기준과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피해지역 내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기준과 피해지역 내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체육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박형수의원안 제44조), 피해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박형수의원안
체육시설 결정 지원	피해지역의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기준과 체육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체육시설 부지 면적 기준 완화

다만, 박형수의원안 제44조제1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와의 연

결 문구를 누락한 채로 각호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조문정리가 필요함.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국토교통부는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결정한 용도지역과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체육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산불피해와 무관한 관내 타지역에 체육시설을 허용하는 특례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5. 공공용 시설 설치 시 부담금 감면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5조).

박형수의원안
제45조(공공용 시설 설치 시 부담금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범위, 감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함.[168]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169] 부담금의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70]

---

1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6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박형수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농지법」171)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제정안은 기존 농지를 전용하여 해당 토지 위에 공공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박형수의원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부담금별 소관 부처에서 부담금의 부과목적 및 취지, 감면 필요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1)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2023. 8. 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보임.

다만, 부담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172]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대상 및 공공용 시설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 감면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여러 입법례를 살펴보면, 감면대상이 되는 부담금의 근거규정[173]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17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17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감면 및 면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현행 규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주택 등의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농지·산지전용 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등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36. 공무수행사망자 특례 인정 및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산불의 진화작업, 인명구조, 구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외의 사람을 지원하려는 것임(임미애의원안 제22조제1항제15호 및 이만희의원안 제40조).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40조(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진화작업, 인명구조, 산불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외의 자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작업, 인명구조, 구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만희위원안과 임미애의원안은 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됨.

이만희의원안은 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진화작업, 인명구조, 산불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를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하여 ② 「공무원 재

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174]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례[175]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임미애의원안은 ①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하여 ② 생계 안

---

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수행사망자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②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규정과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의 인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기관장(소속 기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순직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날부터 그 급여의 지급 결정(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라 지급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구분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공무수행 사망자 인정범위	-초대형산불 진화 등의 공무 수행 사망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진화 작업, 인명구조, 산불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를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외의 자
지원범위	-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산불진화, 인명구조, 구난행위 등을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176] 그 유족이 동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177] 보훈 등의 예우[178]를 받을 수 있음.

---

17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2022. 1. 11.>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17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5. 재해유족급여
가. · 나. (생 략)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그러나 산불진화, 인명구조, 구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7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상 적용자일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공무수행사망자로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예우를 받을 수 있음(「공무원재해보상법」 제2조제 및 제60조).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원인으로 한 사망자는 총 31명인데, 이 중 사망원인이 산불진화, 인명구조, 구난행위 등 산불진압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자는 5명이고, 이 중 공무원이 아닌 사망자는 4명으로 나타남.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 현황 】

사망원인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자	계
산불진화, 인명구조, 구난행위	1	4	5
기타	-	26	26
계	1	30	31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도 초대형 산불 진화 업무 수행 사망자 중 공무원 아닌 자 현황 】

산불진화 업무 사망자 중 공무원 아닌 자	사망 원인	사망 당시 소속 및 신분	비고
A	산불진화 (지상진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B			
C			
D	산불진화 (헬기 추락)	민간업체 직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계약한 민간헬기 조종사[179]

자료: 산림청

179)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업체와 계약(인건비 포함)을 통해 산불조심 기간 등 일정 기간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함.

제정안들은 산불진화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과 같은 대우와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거나 유족에게 생계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산불진화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점, 공무원이 산불진화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6호, 제9호가목 및 다목) 동일하게 산불진화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산불진화 업무로 사망한 공무원과 동일한 보상과 대우를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들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임미애의원안은 초대형산불 진화 등의 공무 수행 사망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으로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수행 사망자의 개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수행 사망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유족에게 생계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망자에게는 급여와 보훈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 해당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지원을 이미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공무원재해보상법」 제59조제5항 및 제60조제1항), 제정안에서 별도로 생계지원 제공 조항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이만희의원안은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지원 내용을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만으로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와 인사혁신처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무수행 사망자 인정 제도의 취지는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민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것인데,[180] 제정안의 법문은 산불 대응 등의 활동 중에 사망한 자라면 산불대응 등 활동의 성격에 관계 없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 사망자로 인정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181]

참고로 산림청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힘.

---

180)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제도인 민간의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함*.

산업재해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인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출처: 마승렬, 신종욱. (2009).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경제적 손해와 적정 보상에 관한 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20(2). 93-127.

181) 예를 들면, 산불 진화 업무라 하더라도 공무 수행 의지 없이 집 주변의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에도 동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근로계약(또는 용역계약) 및 이에 따른 관리 감독 관계를 전제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만희의원안 제40조는 국가·지자체와의 계약 관계, 관리·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산불 대응 등 활동 중 사망한 자라면 누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 사망자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향후 법령 적용 및 보상 과정에 혼란이 우려되는 바 규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는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7.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불고위험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우선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6조, 이만희의원안 제41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6조(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대응장비, 감시시스템, 예방교육 등을 우선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고위험지구로 자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산불고위험지구 지정은 3년마다 재평가하여 갱신하며, 지정 기준, 관리 방법 및 지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산불고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1.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2. 산불 위험 저감을 위한 산림 정비 및 관리 지원 3. 주민 대피시설 및 대피로 구축 지원 4.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시설 5. 그 밖에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구 내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대응장비, 감시시스템, 예방교육 등을 우선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고위험지구로 자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산불고위험지구 지정은 3년마다 재평가하여 갱신하며, 지정 기준, 관리 방법 및 지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산불고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1.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2. 산불 위험 저감을 위한 산림 정비 및 관리 지원 3. 주민 대피시설 및 대피로 구축 지원 4.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시설 5. 그 밖에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구 내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고위험지구의 지정, 지정기간, 지정지역 지원 및 비용 지원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정	산불고위험지역 지정 지역에 대응장비, 감시시스템, 예방교육 등 우선 배치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자체 지정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지정기간	3년마다 재평가하여 갱신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지정지역 지원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및 인력, 산림 정비 및 관리, 주민 대피시설 및 대피로 구축, 산불 예방 임도 시설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비용 지원	국가, 지자체는 산불고위험지구 내 토지 소유자, 거주자가 산불 예방 및 대응 조치 이행 시 비용 지원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불취약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도는 산불발생 위험도, 산불피해 위험도를 반영하여 4개 등급(A~D)으로 구분하고, A·B등급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에 따라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182)]

따라서 제정안들의 산불고위험지구 지정은 산불취약지도 작성과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실태조사 및 필요한 조치 의무를 마련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제정안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183]

기획재정부는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182)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83)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발생('15~'24년 기준) 원인은 입산자 실화 31%,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4%, 담뱃불 7%, 건축물화재 6%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38.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의 산불예측 시스템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경보체계 마련 의무 등을 규정하여 산불 예측 및 대피체계를 고도화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8조, 이만희의원안 제42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8조(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① 국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봄·가을 산불 조심기간 중 각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풍속에 따른 대피 기준을 포함한 표준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피 매뉴얼을 수립·운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간당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한 사전 대피 범위(최소 10km 이상) 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피지원 방안 3. 산불 방향 및 풍속에 따른 단계별 대피 요령 4. 마을별 대피 경로 및 대피소 지정 5. 강풍 시 이격거리 확대 기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는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의 지방자치단체 이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민관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42조(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① 국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봄·가을 산불 조심기간 각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풍속에 따른 대피 기준을 포함한 표준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피 매뉴얼을 수립·운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간당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한 사전 대피 범위(최소 10km 이상) 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피지원 방안 3. 산불 방향 및 풍속에 따른 단계별 대피 요령 4. 마을별 대피 경로 및 대피소 지정 5. 강풍 시 이격거리 확대 기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는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의 지방자치단체 이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민관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평가·개선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국가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에 제공 표준 대피 매뉴얼 마련(산불 발생 풍속에 따른 대피 기준 포함)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으로 예측 정확도 개선 및 관련 기술의 지자체 이전 지원, 민관협력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지원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지자체	주민경보체계 마련·운영 (봄·가을 산불 조심기간 중 각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맞춤형 대피 매뉴얼 수립·운영 - 시간당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한 사전 대피 범위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피 지원 방안 - 산불 방향 및 풍속에 따른 단계별 대피 요령 - 마을별 대피 경로 및 대피소 지정 - 강풍 시 이격거리 확대 기준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평가	국가와 지자체는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개선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청은 현재 산불위험예보시스템(산불발생 前)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불발생 後)을 운영 중이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예보,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산림재난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활용하여야 함.[184]

또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사업을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85]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국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 하여금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의무

---

184)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2. 산사태 예측정보 등 산사태등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산림재난 위험지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의 제출과 산림재난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5) 「산림재난방지법」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및 정보의 교류, 홍보,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화하고 있으며,[186]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초고속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25.4.17.)된 바 있음.

따라서 제정안들의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사업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라 산불예측시스템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운영, 민간기술기업과의 기술협력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제정안의 산불예측시스템, 표준매뉴얼 및 민간기술협력 등 대피체계 고도화의 내용은 현행법과 중복되어 수용이 어려우나, 초고속산불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대피훈련은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에 따라 봄·가을 산불 조심기간에 각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임.

---

1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39. 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9조, 이만희의원안 제43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9조(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산불 이력, 경사도, 식생 등 산림 중심 정보 2. 고령자 비율, 대피소 접근성, 통신 음영지역, 민감시설 등 생활권 기반 정보 3. 마을 단위 대피 우선순위 설정 및 위험등급 분류 ② 마을 산불위험지도는 재난대응 매뉴얼, 자원 배치계획, 재난문자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산불 이력, 경사도, 식생 등 산림 중심 정보 2. 고령자 비율, 대피소 접근성, 통신 음영지역, 민감시설 등 생활권 기반 정보 3. 마을 단위 대피 우선순위 설정 및 위험등급 분류 ② 마을 산불위험지도는 재난대응 매뉴얼, 자원 배치계획, 재난문자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마을 산불위험지도 작성·활용, 산림 중심 정보 등의 포함사항 및 활용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구축	지자체는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포함사항	산림 중심 정보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 산불 이력, 경사도, 식생 등, 생활권 기반 정보 - 고령자 비율, 대피소 접근성, 통신 음영지역, 민감시설 등 마을 단위 대피 우선순위 설정 및 위험등급 분류	
활용	재난대응 매뉴얼, 자원 배치계획, 재난문자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활용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불취약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도는 산불발생 위험도, 산불피해 위험도를 반영하여 4개 등급(A~D)으로 구분하고, A·B등급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청장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87]

187)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제작하는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전국단위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제정안은 피해지역을 제한적으로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산불위험지도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을 포함한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구축·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다.

40. 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7조, 이만희의원안 제44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47조(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불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운영 2. 야간 산불 진화장비 및 드론 등 첨단 대응기술 적용 3. 재난 회복형 임시주거지 및 정착촌 조성 4.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5. 산림·농경지의 통합적 복구 및 생태적 회복 모델 적용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각종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운영 방식,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불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운영 2. 야간 산불 진화장비 및 드론 등 첨단 대응기술 적용 3. 재난 회복형 임시주거지 및 정착촌 조성 4.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5. 산림·농경지의 통합적 복구 및 생태적 회복 모델 적용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각종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운영 방식,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범사업의 지정·운영, 기능 및 특례 우선 적용 규정을 두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사업 지정·운영	국가, 지자체가 지정·운영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사업 기능	①산불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운영, ②야간 산불 진화장비 및 드론 등 첨단대응기술 적용, ③재난 회복형 임시주거지 및 정착촌 조성, ④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⑤산림·농경지의 통협적 복구 및 생태적 회복 모델 적용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우선 적용	시범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에 각종 특례 조항 우선 적용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제정안은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산불대응 및 산불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특별법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므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마을 단위의 산불대응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을 법에 명문화 한 입법례가 거의 없으므로, 제정안에 대하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41. 장비·시설 등 지원 및 대응장비·인프라 확충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효율적 진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확충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0조, 이만희의원안 제45조 및 제46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0조(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①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1. 8천 리터 이상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대형 헬기 2.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특수 장비 3. 산불 감시 및 초기 진화를 위한 드론 시스템 4. 산불 확산 억제를 위한 전문 지상 장비 5. 수송기 기반 대형 진화시스템 6. 산불진화 및 예방을 위한 산불 임도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시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대응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와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진화가 어려운 강풍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④ 대응장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며, 장비 운영 현황과 성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다.	제45조(장비·시설 등 지원) ① 국가는 산불예방과 효율적 진화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장비 구입·임차 비용 및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감시 인프라 구축 2. 대형 산불진화헬기,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무인감시카메라, 야간 진화장비 등 3. 진화대원 방염복등 개인 진화장비 등 4. 산불 대응을 위한 '남부권 국립 산불방지센터' 경남지역 설립 ②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피해지역의 복구 및 산림관리 등을 위한 임도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진화가 어려운 강풍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② 대응장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며, 장비 운영 현황과 성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 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장비 및 시설과 국비 지원, 장비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이만희의원안은 추가적으로 남부권 국립 산불방지센터의 경남지역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피해지역의 복구 등을 위한 임도개설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대응장비 및 시설	8천리터 이상 물탱크 보유 대형 헬기,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특수 장비, 산불 감시 및 초기 진화용 드론 시스템, 산불 확산 억제 전문 지상장비, 수송기 기반 대형 진화시스템,	산불 감시 인프라, 대형 산불진화헬기,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무인감시카메라, 야간 진화장비, 개인 진화장비, '남부권 국립 산불방지센터' 경남지역 설립
	산불 임도 시설	지자체는 산림피해지역 복구 및 산림관리 등을 위한 임도개설 시행(국립공원 포함)
	강풍 시 산불진화를 위한 맞춤형 장비 개발·도입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국비 지원	국가는 산불대응장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국비 지원	국비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평가	장비 운영 현황과 성과를 매년 평가·개선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 CCTV 교체, 소화시설·감시탑 설치, 산불진화차량·개인진화장비 확충, 교육·훈련 등 산불예방·대응을 위한 예산(2025년 본예산 148억원)을 지원 중이며,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을 계기로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립(2023년~2027년, 총사업비 87억원)을 위한 시설

을 건축 중에 있음.

또한, 제정안의 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산불 예방·진화 장비·시설의 지원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88]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제정안의 장비·시설 등 지원 및 대응장비·인프라 확충 사항은 「산림재난방지법」과 중복되고,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다만, 광역권 산불 예방·진화 시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만희의원안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성격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

188)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았으나 본 조항에 근거하여 기관내 별도 기구 설치가 가능한 바, 정부내 기구신설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에 따라 개별법령이 아닌 소관부처 직제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임.[189)]

기획재정부는 특정 권역 등을 한정한 산불방지센터 명기는 법 체계상 부적합하며, 이만희의원안 제45조제1항제4호는 제1호～제3호의 장비·인프라를 갖춘 구체적인 시설 예시에 해당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 사항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89)「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직제 등 개정요구서
3. 기관 일반현황 및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재배치 추진계획

42.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의류, 생필품, 침구류 등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51조, 이만희의원안 제47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1조(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의류, 생필품, 침구류 등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 관리 기준, 보관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호물품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 의류 및 침구류 2.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 3. 재난 대비 비상식량 및 식수 4. 응급의약품 및 의료용품 5. 그 밖에 재난 구호에 필요한 물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공급망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비축 구호물품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	제47조(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의류, 생필품, 침구류 등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 관리 기준, 보관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호물품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 의류 및 침구류 2.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 3. 재난 대비 비상식량 및 식수 4. 응급의약품 및 의료용품 5. 그 밖에 재난 구호에 필요한 물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공급망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비축 구호물품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의류 및 침구류,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 재난 대비 비상식량 및 식수, 응급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재난 구호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목적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	
	비축 대상	1. 의류 및 침구류 2.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 3. 재난 대비 비상식량 및 식수 4. 응급의약품 및 의료용품 5. 그 밖에 재난 구호에 필요한 물품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 관리 기준, 보관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	
	국가등 의무	1.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공급망과 절차 마련 2. 매년 비축 구호물품 현황 점검, 물품 교체 및 추가 확보 3. 구호물품 비축·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다만, 현행 「재해구호법」은 시·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

를 확보하도록 하고,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190]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구호물품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난 대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재해구호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의 보완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현행 「재해구호법」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재해구호물자의 확보·보관 및 관리·점검[191]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190)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15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1. 확인·점검의 일시
2. 확인·점검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확인·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한 결과를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내용을 특별법에 중복하여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리에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구호 물자와 조직인력 등을 확보하고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중인바, 특별법에 별도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192]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2)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행안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 점검해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43. 재해예방시설 설치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또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복구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2조, 이만희의원안 제48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2조(재해예방시설 설치) ① 산불 또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 2.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조성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재해예방시설 설치) ① 산불 또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복구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2.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조성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재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포함 사항과 비용 지원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재해예방시설 설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사이 완충지대 조성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비용 지원	국가는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제정안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재난안전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방댐 설치 및 완충지대 조성 등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역의 복구에 관한 사항은「재난안전법」,「자연재해대책법」 및 「산림재난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복구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193]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51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44.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안 제53조, 이만희의원안 제49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3조(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산불고위험지역 및 피해지역에는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주민 참여형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49조(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와 예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고, 박형수의원안은 나아가 산불고위험지역 및 피

해지역에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 2회 이상 주민 참여형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국가, 지자체는 지역주민 산불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불고위험지역 및 피해지역에 의무 훈련 프로그램 도입 (연 2회 이상 주민 참여형 모의훈련 실시)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예산 확보	국가, 지자체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보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인센티브 제공	국가는 교육 및 훈련 참여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개선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정부·지자체 및 산불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산불합동진화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대구 달성군에서 산불 재난대응 안전 훈련이 실시된 바 있음(2024.10.29.).

제정안들은 전국단위의 합동 훈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므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은 필요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194]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동 사항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94) 산림청은 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제1항) 및 훈련 참여 주민·단체·기업 등에 인센티브 제공(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예산 확보(제2항),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제4항)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5. 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4조, 이만희의원안 제50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4조(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②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발생 시 마을 주민 대피 지원 2. 산불 발생 초기 상황 보고 및 고립 주민 확인 3. 재난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특별 관리 및 지원 4. 마을 단위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대응 활동 ③ 마을순찰대는 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순찰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보험 가입 지원 4. 그 밖에 마을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마을순찰대 활동 중 재난대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포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주민 대피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②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발생 시 마을 주민 대피 지원 2. 산불 발생 초기 상황 보고 및 고립 주민 확인 3. 재난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특별 관리 및 지원 4. 마을 단위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대응 활동 ③ 마을순찰대는 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순찰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보험 가입 지원 4. 그 밖에 마을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마을순찰대 활동 중 재난대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포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⑥ 마을순찰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마을순찰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및 구성, 수행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운영	지자체는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운영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수행업무	마을 주민 대피 지원, 산불 발생 초기 상황 보고 및 고립 주민 확인, 재난취약계층 특별 관리 및 지원, 마을 단위 재난 예방 활동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구성	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의 자율적 구성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교육훈련 및 장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험 가입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포상 또는 보상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으로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이 있으나,[195] 전국 산불예방 및 감시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역여

195) 공중진화대(국가, 10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국가, 435명+6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가·지방자치단체, 9,604명), 산불감시원(자체수행, 12,128명)

건을 잘 알고 있는 이장·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구성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므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전국 산불예방 및 감시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순찰대를 구성하여 재난예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소방청은 마을순찰대의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의용소방대가 현행법령 상 재난발생 시 마을주민 대피 지원, 초기 상황 보고 및 마을 단위 재난 예방 활동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196] 산불을 포함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측면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교육·훈련 활성화 등)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마을순찰대를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재난안전법」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9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재정부는 마을순찰대 운영 여부는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특별법보다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6.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추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5조, 이만희의원안 제51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5조(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불예측 및 확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2. 산불 조기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3. 산불 진화 장비 및 기술 개발 4. 산불 피해 최소화 및 복구 기술 개발 5. 그 밖에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 ③ 국가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불예측 및 확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2. 산불 조기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3. 산불 진화 장비 및 기술 개발 4. 산불 피해 최소화 및 복구 기술 개발 5. 그 밖에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③ 국가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연구개발 지원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지원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불예측 및 확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산불 조기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산불 진화 장비 및 기술 개발, 산불 피해 최소화 및 복구 기술 개발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가능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산불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사업을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97]

따라서 제정안들의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산림재난

197) 「산림재난방지법」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및 정보의 교류, 홍보,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제정안의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은 현행법과 중복되고,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지역에만 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동 사항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47. 산불폐기물 처리·복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5조, 임미애의원안 제22조, 이만희의원안 제52조).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13. (생 략) 14. 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비용 지원 15. ~ 18. (생 략)	
제35조(산불폐기물 처리 등) ① 국가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제52조(산불폐기물 처리 등)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폐기물(생활폐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등)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기물, 건물폐기물 등)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장비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임미애의원안의 경우 100분의 70 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국고부담	산불폐기물 처리	전액 지원	100분의 70 이상 (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전액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장비 등 복구 비용			
	공사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재난안전법」[198]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에서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에 따르면 금번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에도 폐기물처리비 1,420억원을 국비 100%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동 제정안에서 국고 지원의 근거를 중복으로 신설할 규정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재난안전법」[200]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1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9)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2. 피해수습지원

구분	소관기관 (협조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등에 관한 규정」[201]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복구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기존의 유사 지원 조항과의 형평성과 피해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환경부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의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어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고,

---

20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2. 피해수습지원

구분	소관기관 (협조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가시설의 경우: 국고 100% 나) **지방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공공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비용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법」 상의 국고 보조율과 동일하게 100분의 50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재난안전관리법」 상에서는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48. 위험목 제거사업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산림소유자 부재 및 확인 불가 시 산림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6조, 이만희의원안 제53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6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산사태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3. 공고 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산불·산사태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3. 공고 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의 사업 시행, 소유자 통지, 산림소유자 부재 또는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진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실 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사업 시행	대형산불·산사태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 사업 시행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소유자 통지	사업 시행 후 산림 소유자에게 통지 소유자 부재, 확인 불가 시 -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 통지 불가능 시 해당 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손실 보상	사업 시행으로 소유자에게 손실 발생 시 손실을 보상	

산림청은 2013년부터 '위험목 제거사업'('23년 이전 긴급벌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지의 경우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203]

이에 제정안들은 산림 소유자 동의 규정을 완화하여 위험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위험목 제거사업이 아닌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긴급한 산불피해지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공탁·예치하여 산림소유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204]

---

2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4)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후 제거된 피해목은 매각하여 매각금액을 산주에게 돌려주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산림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임.

49. 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 임도 설치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산림소유자 부재 및 확인 불가 시 등기부등본 상 산림소유자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7조, 이만희의원안 제54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7조(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임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후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상 산림 소유자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산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3.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불진화임도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임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후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상 산림 소유자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산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3.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불진화임도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 내 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의 사업 시행, 소유자 통지 및 산림소유자 부재 또는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진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산림소유자에게 손실 발생 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37조, 이만희의원안 제54조).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사업 시행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 설치 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 사업 시행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소유자 통지	사업 시행 후 산림 소유자에게 통지 소유자 부재, 확인 불가 시 - 등기부등본 상 산림 소유자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 통지 불가능 시 산림 소재지 지자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손실 보상	사업 시행으로 소유자에게 손실 발생 시 손실을 보상	

산림청에 따르면, 부재 산주 비율이 56%인 현실에서 임도예정노선 내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는 어려워 임도노선을 변경·우회하여 임도를 설치하는 상황이며, 동의를 받아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도 사후 재산권 행사 또는 산림소유자 변경 등에 따라 임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

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제정안들은 산림 소유자 동의 규정을 완화하여 피해지역 산불 예방과 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산불진화임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임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5]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박형수의원안 제37조제1항 및 이만희의원안 제5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

2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칙」 제5조제5항”은 상위의 근거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206]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토지 등의 임의 사용은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사용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50.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에 산림경영특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와 관련하여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지원 등의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8조, 이만희의원안 제55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8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지원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4. 생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5. 협업경영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산림경영특구로 선정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지원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4. 생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5. 협업경영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산림경영특구로 선정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의 산림경영 지원과 관련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선정, 지원, 구성 형태 및 운영 지원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산림경영특구 구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생산자단체,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경영특구 운영 지원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지원, 산림경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산림사업 지원, 생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협업경영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산림경영특구 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 지원 가능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의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매년 추진 중에 있음.

제정안들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 등에게 지원 대상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내 임업인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피해지역 임업인 등에게 산림경영을 지원하려는 제정안들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박형수의원안 제38조제4항 및 이만희의원안 제55조제4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2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으로 수실류 등 79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법 체계 충돌 및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51. 산림 투자선도지구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는 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우선 배정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9조, 이만희의원안 제56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9조(산림 투자선도지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2. 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우선 배정 3.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4.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산림 투자선도지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2. 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우선 배정 3.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4.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적용 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정	지자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 지정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적용 특례	①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②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우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선 배정, ③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④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 ⑤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들은 산림 투자선도지구 내 지방세 감면 등 특례를 부여하여 임업인의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산림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일반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과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정의, 사업 내용,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인허가 의제의 종류 등 적용 특례의 대강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207]

---

207) 참고로,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신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제정안의 산림 투자선도지구는 지구 내 실시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없이 인허가, 지방세 감면, 토지 수용 등의 특례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구 선정 기준 및 지구 내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및 고시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결정·지정·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2. 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근거 마련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영농모델을 지원하고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27조 및 이만희의원안 제57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27조(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영농모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공동경작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공동영농조직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제57조(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영농모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공동경작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공동영농조직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최근 농가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일손 부족, 소규모 농가의 비율 확대 등[208]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영농을 통한 기계화, 규모화로 비용 절감 등을 이루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정부 역시 '역동적 혁신경제('24.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농업·농촌 혁신 전략('24.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등을 통해 공동영농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 확대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제정안은 이러한 공동영농모델이 특히 산불 피해지역에서의 신속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인구 고령화 심화, 소규모 농가 증가 등에 대응하여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공동영농

208)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및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56%에 달하고 있음. 또한, 경지규모 1.0ha 미만의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97만4천)의 74.0%에 해당함.

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 확대 지원을 추진 중으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기획재정부는 동 사항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법체계 충돌 및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53.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지역주도형 산림복원·활용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32조, 이만희의원안 제58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박형수의원안 제33조, 이만희의원안 제59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2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3.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산림,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7. 공공주도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방안 8. 탄소흡수원, ESG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방안 9. 산악스포츠(그란폰도, 패러글라이딩 등)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10.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	제58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3.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산림,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7. 공공주도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방안 8. 탄소흡수원, ESG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방안 9. 산악스포츠(그란폰도, 패러글라이딩 등)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10.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용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을 탄소흡수원, 바이오자원 생산지, 산림관광지, 레저시설, 4차 산업 기반 스마트산림 등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용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을 탄소흡수원, 바이오자원 생산지, 산림관광지, 레저시설, 4차 산업 기반 스마트산림 등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단순 조림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1.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공익(관광) 시설의 설치 2.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복원과 관련된 시설 개선 3. 산림 관광 자원화 및 소득 창출 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3항의 사업은 복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라 승인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비가 사용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원 및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계획의 수립·승인, 보조금의 사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1.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공익(관광) 시설의 설치 2.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복원과 관련된 시설 개선 3. 산림 관광 자원화 및 소득 창출 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이 법에 따라 승인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비가 사용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원 및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계획의 수립·승인, 보조금의 사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행계획 포함사항, 용도지역 제한 완화, 재원보장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실행계획 수립	지자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실행계획 포함사항 -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방안 -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체계 구축 방안 -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산림,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 공공주도 지역상생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방안 - 탄소흡수원, ESG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방안 - 산악스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용도지역 제한 완화	지자체는 피해지역을 탄소흡수원, 바이오자원 생산지, 산림관광지, 레저시설, 4차 산업 기반 스마트산림 등으로 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 적용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재원보장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보장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또한,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복구계획 수립, 피해지역 보조금 활용, 반환의무 면제 및 지역 참여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산림청장으로부터 복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조림사업 외로 사용하더라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복구계획 수립	지자체는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계획 수립 시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피해지역 보조금 활용	산림공익(관광)시설 설치, 지역주민 생활기반 복원 관련 시설 개선, 산림 관광 자원화 및 소득 창출 사업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복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반환의무 면제	승인 복구계획으로 복구비 사용 시 반환 의무 면제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지역 참여 방안 마련	지자체는 산림복원 및 활용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 보장 방안을 마련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현행 산불발생 피해지역은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별 조림복구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통하여 복구를 실행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

지하고 있는데, 산림복구를 위한 보조금을 조림사업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209]

더욱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래의 보조금 목적과 관련성 있는 용도로 제한하며,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피해지역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중 “산악스포츠(그란폰도, 패러글라이딩 등)”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정의되어 있는 “산림레포츠”로 법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210]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조림사업 보조금을 시설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기존 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보조금과의 중복 및 조림사업의 축소가

2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는 산악자전거시설, 패러글라이딩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20조, 시행령 제9조의4 및 별표 3의3). 참고로, 그란폰도는 장거리 자전거 주행을 말함.

우려되고, 사업간 유사성도 부족하므로 박형수의원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과 이만희의원안 제59조제3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211]

국토교통부는 제정안과 같이 피해지역을 바이오자원 생산지, 관광지, 레저시설 등으로 개발 시 해당 지역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이 기존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입지하는 것은 기반시설 용량 초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불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생태계 복원을 넘어서 관광 자원 형성 등 복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11)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은 2023년에 지방이양되었음(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54.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 임산물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4조, 이만희의원안 제60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4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취 임산물(송이, 능이, 수액 등)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송이 등 임산물 채취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 및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은 임업경영 회복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취 임산물(송이, 능이, 수액 등)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은 임업경영 회복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지역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채취 임산물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수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채취 임산물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채취 임산물(송이, 농이, 수액 등) 및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보상금 보조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보상금 산정기준	송이 등 임산물 채취 불가능 지역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 및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지급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피해지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현행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의 복구지원 대상에 송이 등 채취 임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남권 산불피해 지역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5,871업체, 약 17천ha)는 등록된 산지가 산불피해를 입어서 임업 경영이 불가능한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3조는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규정하고 있는바,[212] 산불피해를 입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대해 계속해서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다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과 관련해서는 산불 피해지역에 조건 없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와의 형평성 문제 및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발생하므로 세부적인 요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산림청은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경우,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피해 임업인 등에게 보조 및 융자를 우선지원하여 피해지역 내 임업인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12)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55.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현행법 체계에 따른 제조혁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시 국고보조율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31조, 이만희의원안 제61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1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제61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국고보조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국고보조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통하여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213]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ICT융합스마트공

21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 산·학·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 공급기업의 육성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장보급확산’ 사업 내 내역사업인 ‘제조혁신 구축지원’ 사업을 101억원 증액하였고, 증액반영분에 대한 추가 중소기업 모집 공고를 2025년 5월 12일 완료한 바 있음.

제정안들은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우선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제조혁신 기반을 확충하고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들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원 대상이 실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 지원분이 실제 피해기업이 아닌 자에게 귀착되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이 아닌 출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출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적용되지 않은 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박형수

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의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보조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도 산불피해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 및 우선지원 근거 신설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보조가 아닌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6. 피해지역 산림관리 권한의 위임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가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정비·개발을 위해 일정 범위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 권한의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40조).

박형수의원안
제40조(피해지역 산림관리 권한의 위임) ① 국가는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정비·개발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권한의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해제 및 권한 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4.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감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및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적지판정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유림의 관리 및 운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권한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권한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권한 11.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1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② 위임된 권한의 시행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절차적 요건은 최소한으로 간소화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지역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기술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① 총괄

박형수의원안은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은 산림 관련 법령에서 산림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관리, 인허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국유림의 관리 및 운영은 산림청장(소속기관장)이 직접 소관하며, 제주 지역에 대해서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림의 경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권한위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박형수의원안 제40조제1항제1호 중 보전산지의 지정은 오히려 피해지 복구 및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권한 위임

박형수의원안 제40조제1항제10호는 국가가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정비·개발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때 피해지역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권한[214]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14)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시·도지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광지등의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215]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총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216]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완화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의 피해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2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1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52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이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말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관광단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지정해야 한다.

1.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갖출 것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

인구감소지역에 대부분 포함[217]되어 있어, 현행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지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

충 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전 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 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 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행정안전부고시제2024-15호(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 동 제정안의 산불 피해와 무관한 광역지자체 제외
*** 피해지역 별도 표시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총괄

산림청은 박형수의원안 제40조제1항제1호(보전산지의 지정, 변경·해제 및 권한)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42)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3ha미만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지정해제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불발생 피해지는 보전산지의 해제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생길 경우 방화 등으로 인해 인명,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하 해제기준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17) 경남 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박형수의원안 제40조제1항제2호(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도 도시·군관리계획 등 대규모 산지의 구역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균형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218]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방향 변경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권한 위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불피해지역의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권한 위임이 적용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박형수의원안 제40조제1항제11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 계획 및 재난복구 계획에 따라 시급히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위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218) 현행 200ha미만 산지(보전산지 100ha미만)의 구역협의는 시·도지사의 권한인 지방사무임.

57. 증액교부금 지원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8조, 이만희의원안 제64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8조(증액교부금 지원) ①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피해규모, 복구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규모와 산정 기준, 교부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액교부금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증액교부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교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증액교부금 지원) 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피해규모, 복구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규모와 산정 기준, 교부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액교부금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증액교부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교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각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을 정하고 있음.[219]

제정안들은 모두 법률에 따라 정해진 교부세의 재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증액교부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번 산불 재난 피해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복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증액교부금 교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219)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 12. 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하여 차질없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증액교부금	목적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	
	내용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	
	적용 기간	산불 발생일부로부터 5년간 적용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의 증액교부금 교부 근거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별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일반법인 「지방교부세법」에 규정하여 통일성 있는 지방재정 정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 대상을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8.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59조, 이만희의원안 제65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59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에 있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에 있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용도 및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220]

제정안들은 모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며, 우선 배분에 관한 특례를 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불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배분 특례	내용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	
	용도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적용 기간	산불 발생일부로부터 10년간 적용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수년간의 인구변화·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지역에 기금을 우선 배분할 경우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정 재난의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가 기금관리조합을 통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기금의 운영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운영 주체인 시·도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9.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첩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60조, 이만희의원안 제66조).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60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절차 ②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용도지	제66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절차 ②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용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완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소화 및 규제 유예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간소화 및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완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소화 및 규제 유예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간소화 및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구분	박형수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중첩 규제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적용기간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3년 이내 연장 가능)	(박형수의원안과 같음)

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계획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22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사업 등에 있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은 다양한 관계기관 등이 연관되어 있으며, 개발에 따른 환경, 경관, 안전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국토계획법」 규정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②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상 건축허가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상 건축허가[222]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을 거쳐야 하는데,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보다 신속히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해 허가 전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 절차 전반을 간소화 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생태보전지역 등에서의 규제 완화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태보전지역·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지역의 보다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 보임.

④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박형수의원안과 이만희의원안은 피해지역 내 산림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복원, 피해지역 내 산림개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피해지역 내 산림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제정안은 산불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등 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4조[223]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복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지전용 허가의 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데 있는 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이미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⑥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224]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223)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내 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개발 행위에 중점을 두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그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⑦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제정안은 피해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

2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1. 23.,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보전지역[225]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 문화유산보호구역[226]에서는 건축 등 행위가 중첩적으로 제한[227]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22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2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76조[228]에 따라 문화유산보호구역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용도 제한을 따르며, 문화유산보전지역의 경우 각 법률에서 추가적인 용도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개별법에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입안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절차 준수가 필요하

---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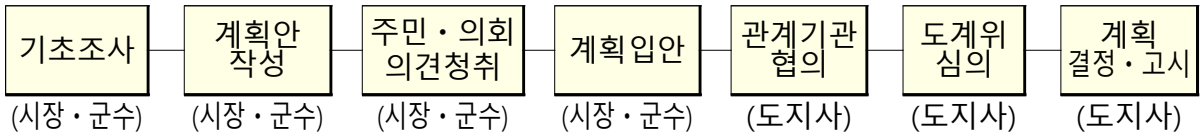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는 입장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도>



②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그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건축허가 시 타법에 따른 의제사항을 동시에 검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229]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예외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생태보전지역 등에서의 규제 완화

환경부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제정안에서 사용된 '생태보전지역' 용어는 현행법상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번 산불피해지역에서

229) **「건축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230]인 「자연공원법」 제23조[231]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습지보전법」 제13조[232]에 따

230) 국립공원(주왕산·지리산), 습지보호지역(영양 장구메기)

231) **「자연공원법」 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32)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적용 특례(제5장)[233]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피해지역 내 대상사업 추진 시 보다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등 허가와 관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행위허가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가절차의 간소화는 문화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3) **「환경영향평가법」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청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마련 시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⑤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 허가의 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곤란하고,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허가 의제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⑥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국가유산청은 적극적인 개발 행위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그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으며, 허가 신청 즉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허가 신청서가 진달되는 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간소화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⑦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

별법에서 「국토계획법」 상 허용용도, 건폐율 등을 강화하여 적용 중이므로 해당 지역·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경우 개별법에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복구할 때 문화유산과 조화롭게 복구되어야 하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60. 권리의 소멸시효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려는 것임(임미애의원안 제17조, 이만희의원안 제67조).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지급신청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67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나. 검토의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의 구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률의 보호에서 배제, 보호가치 있는 채무자의 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234]

234)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 참조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임미애의원안 제17조는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만, 「국가재정법」 제96조[235]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236]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재정법」과 동일한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237]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238]

235)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36)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57856 판결).

237)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만희의원안 제67조는 초대형산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중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기산되는 시효기간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보다 긴 5년으로 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기산점	손해배상 책임주체	현행		이만희의원안	
		적용법률	시효기간	적용법률	시효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국가	국가배상법 (민법 준용)	3년	특별법	5년
	그 외의 자	민법	3년		
불법행위를 한 날	국가	국가재정법	5년	국가재정법	5년
	그 외의 자	민법	10년	민법	10년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관한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위원회의 배상금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정안이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소요될 기간과 함께 위원회의 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특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39]

238) 한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기산되는 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이 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참고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법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240]를 두고 있음.

239) 그 밖에, 국가에 우선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가 권리행사에 태만하여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가해자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음.

24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이만희의원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만희의원안 제68조).

이만희의원안
제6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41)242)]

---

24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나, 배임수재죄는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을 요하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약속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뇌물을 요구・약속만 해도 성립하는 뇌물죄와 차이가 있음.

24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공적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안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들에게는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위원회의 배상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결정에 종국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안 제15조), 위원회의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25. 6. 30. 시행 예정) 제37조[243]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4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2. 중복지원 제한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4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 「재난안전법」 및 관련 법령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시행[244]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지원[245] 등

2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생계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제정안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 따른 지원보다 확대된 지원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이미 실시된 지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지

---

2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의 중복 수령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총 1조 8,809억원의 예산이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임.

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이미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같은 종류의 지원일 경우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63. 비밀준수 등 의무 및 벌칙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비밀준수 의무와 자격사칭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태선의원안 제35조·제36조·제39조, 이만희의원안 제71조·제72조·제75조).

김태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③ (생 략)	제7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2.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③ (생 략)

나. 검토의견

김태선의원안 및 이만희의원안은 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각각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비밀 누설행위, 자격사칭 행위,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246]

246)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25. 6. 30. 시행 예정)[247]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24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64. 권리의 보호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또는 지원금 등을 양도·압류·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이만희의원안 제37조, 박형수의원안 제62조제2항, 임미애의원안 제26조, 이만희의원안 제7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62조제1항).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2조(권리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은 압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6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3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검토의견

① 양도·압류·담보 제공의 금지

금품 또는 채권의 압류 등의 금지는 채무자의 생계유지 및 생활 보장 등 공익상 또는 사회적·정책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법」[248]에서도 사회재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피

해자의 생계·구호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다만, 김태선·임미애·이만희의원안은 압류 등의 금지 대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박형수의원안은 "지원금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지급된 지원금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지원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계좌 등에 입금될 경우에는 다양한 금원이 혼입되어 어떠한 금원이 압류 등의 금지 대상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 제정안은 부정 지급되거나 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 절차가 포함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소득인정액 산정 시 "지원금 등" 제외

박형수의원안은 제정안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 등의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경우 수령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동 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

2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급 자격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249]

제정안은 피해 주민을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정안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을 제외하는 것은, 지원금 등의 지급이 피해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등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상금 또는 지원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도 수급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의 지급목적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

2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250]

2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481호)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참조.

65. 배상금·보상금 등의 환수 및 벌칙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착오로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김태선의원안 제38조, 임미애의원안 제12조, 이만희의원안 제74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김태선의원안 제39조, 박형수의원안 제63조, 임미애의원안 제28조, 이만희의원안 제75조)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제38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제1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

김태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급 또는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2. 제9조에 따른 보상금 3. 제22조에 따른 주거지원금등 ② (생 략)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및 생계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급 또는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2.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3. 제24조에 따른 주거지원금등 ② (생 략)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착오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한 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보상금 등이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보상금 등의 지급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25. 6. 30. 시행 예정) 제38조[251]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법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252] 유사 입법례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만을 규정[253]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

---

25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25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강제징수”로 변경(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세 외의 금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254]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김태선의원안 제38조제2항과 이만희의원안 제74조제2항의 관련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54)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428면.

66. 권한의 위임 및 시행령 위임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박형수의원안 제64조 및 제65조).

박형수의원안
제6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시행령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구분	박형수의원안
위임·위탁	국가·지자체의 권한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자체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 가능
시행령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6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통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안 제65조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할 법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안 제65조를 별도로 둘 실익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고자료1 사회재난 간접지원 항목(36개, 관계기관별 지원)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table>
<tr><th>구분</th><th>지원항목</th><th>지원기준</th><th>관계법령</th><th>비고</th></tr>
<tr><td>1</td><td>국세 납부 유예</td><td>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td><td>「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td><td></td></tr>
<tr><td>2</td><td>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td><td>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td><td>「지방세기본법」 제26조</td><td></td></tr>
<tr><td>3</td><td>국민연금 납부 예외</td><td>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td><td>「국민연금법」 제91조</td><td></td></tr>
<tr><td>4</td><td>상하수도요금 감면</td><td>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td><td>「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td><td></td></tr>
<tr><td>5</td><td>재해복구자금 융자</td><td><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td><td>「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td><td></td></tr>
<tr><td>6</td><td>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td><td>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td><td>「재해위로금 지급규정」</td><td></td></tr>
<tr><td>7</td><td>농기계 수리지원</td><td>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td><td>민간 자율 지원</td><td></td></tr>
<tr><td>8</td><td>지적측량 수수료 감면</td><td>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td><td>「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td><td></td></tr>
<tr><td>9</td><td>병역의무 이행일 연기</td><td>현역병 입영일자 연기</td><td>「병역법」 제61조</td><td></td></tr>
<tr><td>10</td><td>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td><td>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td><td>「국유재산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4조,
「국유림법」 제23조</td><td></td></tr>
<tr><td>11</td><td>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td><td>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td><td>「서명확인법」 제14조</td><td></td></tr>
<tr><td>12</td><td>상속세 재해손실 공제</td><td>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td><td></td></tr>
<tr><td>13</td><td>과태료 징수 유예</td><td>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td><td>「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td><td></td></tr>
<tr><td>14</td><td>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td><td>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td><td>「자동차관리법」 제43조</td><td></td></tr>
<tr><td>15</td><td>위기가족 긴급지원</td><td>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td><td>「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td><td></td></tr>
<tr><td>16</td><td>농지임대료 감면</td><td>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td><td>「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td><td></td></tr>
</table>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19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역법」 제61조 「예비군법」 제5조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24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항목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6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31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32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33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3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농지법」 제38조	
3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산지관리법」 제19조	
36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예비군법」 제5조	

참고자료2 지자체별 피해 현황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경북 의성		경북 안동		경북 청송		경북 영양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계				**1,081,786**	**38,667**	**209,602**	**73,025**	301,080	**36,485**	**250,562**	**9,286**	57,310
사유시설	소계			**517,473**	**9,419**	**46,944**	**45,049**	**169,740**	**15,034**	**129,641**	**2,257**	**18,026**
	주택	전파(동)	3,592	338,663	319	24,876	1,255	102,807	770	87,040	113	11,096
		반파(동)	256	11,589	32	1,333	124	5,357	17	959	11	552
		세입자(세대)	358	-	43	-	79	-	105	-	14	-
		주거불가능(세대)	572	-	36	-	258	-	78	-	13	-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362	4,817	2,537	28,941	1,954	13,766	316	2,371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64	1,388	254	7,403	80	2,515	20	382
	농기계(대)		17,158	34,900	2,829	4,265	6,768	13,357	3,657	10,570	832	1,035
	농작물/산림작물(ha)		3,419	45,014	736	9,540	1,185	10,407	641	14,138	158	2,520
	가축(마리)/꿀벌(군)/곤충(kg)		22,061 24,509 8,265	4,673	173 4,342 -	725	17,527 5,810 7,169	1,426	469 3,744 167	653	115 319 -	70
	수산물(마리)		274,365	1,088	-	-	-	-	-	-	-	-
	어망어구/어선(건)		30	173	-	-	15	42	-	-	-	-
공공시설	소계			**564,313**	29,248	**162,658**	27,976	131,340	21,451	**120,921**	7,029	39,284
	산림청	산림(ha) 국유림	11,218	41,588	892	2,492	2,924	12,802	890	1,103	1,637	6,867
		산림(ha) 사유림	92,658	352,739	27,961	101,251	23,785	69,661	19,765	95,078	5,227	30,481
		산림시설(건)	324	15,218	35	652	141	11,032	43	1,006	34	811
	행안부	도로(건)	57	13,526	14	3,314	7	1,989	14	2,774	5	480
		공공건물 등(건)	86	3,520	46	146	6	403	20	1,673	5	113
		마을기반(건)	17	7,269	2	28,502	8	28,502	4	-	-	28,502
	환경부	환경기초시설(건)	6	2,095	-	-	2	80	2	297	-	-
		상수도 등(건)	68	26,815	15	4,151	12	6,848	17	8,470	4	100
	유산청 국가유산(건)		29	45,058	5	21,263	13	**17,817**	8	5,504	-	-
	국방부 군사시설(건)		4	663	1	50	-	-	2	58	-	-
	국토부 국도(건)		15	6,566	-	-	1	**251**	1	593	1	**181**
	농식품부 수리시설(건)		103	3,433	22	719	50	**752**	19	1,671	8	**251**
	문체부 문화·체육시설(건)		37	34,193	8	28,080	13	**828**	11	1,304	-	-
	복지부 복지시설(건)		16	10,806	3	539	11	**8,876**	1	1,190	-	-
	산업부 에너지시설(건)		5	472	-	-	-	-	1	200	-	-
	해수부 해양시설(건)		2	353	-	-	-	-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북 영덕		경남 산청		경남 하동		울산 울주		그 외 지역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계			309,859	**231,926**	7,398	**21,664**	**1,843**	7,063	1,415	**2,542**	13	38
사유시설	소계		**292,526**	**144,287**	**4,978**	**7,332**	**842**	1,124	**208**	**340**	13	38
	주택	전파(동)	1,105	109,694	26	2,886	2	132	2	132	-	-
		반파(동)	72	3,389	-	-	-	-	-	-	-	-
		세입자(세대)	115	-	2	-	-	-	-	-	-	-
		주거불가능(세대)	187	-	-	-	-	-	-	-	-	-
	농·어업시설(건)		808	10,062	97	748	5	18	27	124	-	-
	임·축산시설(건)		221	8,836	2	2	0	0	0	0	-	-
	농기계(대)		2,946	5,464	83	169	7	7	36	33	-	-
	농작물/산림작물(ha)		296	4,619	278	2,886	121	853	4	50	-	-
	가축(마리)/꿀벌(군)/곤충(kg)		3,679 5,391 929	1,042	10 4,194 -	641	3 701 -	114	85 8 -	1	-	-
	수산물(마리)		274,365	1,088	-	-	-	-	-	-	-	-
	어망어구/어선(건)		13	93	-	-	-	-	-	-	2	38
공공시설	소계		17,333	**87,639**	2,420	**14,332**	**1,001**	**5,939**	1,207	**2,202**	-	-
	산림청	산림(ha) 국유림	3,277	10,258	776	6,075	78	879	744	1,112	-	-
		산림(ha) 사유림	12,931	43,480	1,627	7,101	916	4,596	446	1,090	-	-
		산림시설(건)	46	1,684	9	33	2	-	14	-	-	-
	행안부	도로(건)	16	4,770	1	198	-	-	-	-	-	-
		공공건물 등(건)	9	1,185	-	-	-	-	-	-	-	-
		마을기반(건)	3	7,269	-	13,355	-	13,355	-	3,600	-	-
	환경부	환경기초시설(건)	2	1,718	-	-	-	-	-	-	-	-
		상수도 등(건)	17	6,579	3	667	-	-	-	-	-	-
	유산청 국가유산(건)		1	11	-	-	2	464	-	-	-	-
	국방부 군사시설(건)		1	556	-	-	-	-	-	-	-	-
	국토부 국도(건)		11	5,283	1	258	-	-	-	-	-	-
	농식품부 수리시설(건)		4	41	-	-	-	-	-	-	-	-
	문체부 문화·체육시설(건)		5	3,980	-	-	-	-	-	-	-	-
	복지부 복지시설(건)		1	201	-	-	-	-	-	-	-	-
	산업부 에너지시설(건)		4	272	-	-	-	-	-	-	-	-
	해수부 해양시설(건)		2	353	-	-	-	-	-	-	-	-

참고자료3 지자체별 복구계획 수립내역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경북 의성			경북 안동			경북 청송			경북 영양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880,860	1,213,608	667,253	406,176	247,280	158,896	508,840	330,597	178,243	431,072	274,339	156,733	114,852	76,140	38,712
사유시설 행안부	소 계		495,393	346,792	148,601	49,064	34,349	14,715	163,722	114,608	49,114	120,095	84,069	36,026	18,250	12,778	5,472
	구호	구호금	1,572	1,100	472	120	84	36	296	207	89	330	231	99	230	161	69
		구호비	4,116	2,881	1,235	380	266	114	1,250	875	375	1,022	715	307	140	98	42
		교육비	15	11	4	1	1	-	-	-	-	-	-	-	-	-	-
		생계비	24,442	17,112	7,330	1,938	1,357	581	7,717	5,402	2,315	8,132	5,692	2,440	1,362	954	408
	주거비	전파	317,583	222,308	95,275	26,648	18,654	7,994	106,292	74,404	31,888	72,336	50,635	21,701	10,120	7,084	3,036
		반파	11,170	7,819	3,351	1,362	953	409	5,334	3,734	1,600	798	559	239	496	347	149
		세입자	3,614	2,532	1,082	422	296	126	791	554	237	1,155	809	346	154	108	46
		주거불가능	1,198	838	360	76	53	23	542	379	163	164	115	49	27	19	8
	농업	농업시설	29,464	20,626	8,838	2,385	1,670	715	14,328	10,030	4,298	6,817	4,772	2,045	1,175	823	352
		농작물	22,360	15,652	6,708	2,251	1,576	675	6,857	4,800	2,057	10,106	7,074	3,032	599	419	180
		축산시설	10,050	7,036	3,014	687	481	206	3,640	2,548	1,092	1,188	832	356	159	111	48
		가축/꿀벌/곤충	4,671	3,276	1,395	725	509	216	1,424	998	426	653	458	195	70	50	20
		농기계	13,564	9,496	4,068	1,671	1,170	501	5,346	3,742	1,604	4,004	2,803	1,201	421	295	126
	어업	수산시설	661	463	198	-	-	-	-	-	-	-	-	-	-	-	-
		수산물	1,087	761	326	-	-	-	-	-	-	-	-	-	-	-	-
		어망·어구/어선	60	42	18	-	-	-	14	10	4	-	-	-	-	-	-
	임업	임업시설	120	85	35	-	-	-	23	17	6	58	41	17	30	21	9
		산림작물	40,500	28,350	12,150	9,793	6,855	2,938	7,553	5,287	2,266	11,126	7,788	3,338	2,642	1,850	792
	송이 임가		2,387	1,670	717	159	111	48	723	506	217	550	385	165	24	17	7
	소상공인		6,759	4,734	2,025	446	313	133	1,592	1,115	477	1,656	1,160	496	601	421	180
공공시설	소 계		1,385,467	866,816	518,652	357,112	212,931	144,181	345,118	215,989	129,129	310,977	190,270	120,707	96,602	63,362	33,240
	산림청	위험목 제거	62,887	62,887	-	10,872	10,872	-	25,766	25,766	-	7,371	7,371	-	5,059	5,059	-
		복구조림 국유림	65,849	65,849	-	6,189	6,189	-	27,420	27,420	-	4,785	4,785	-	10,623	10,623	-
		복구조림 사유림	624,192	315,552	308,640	223,528	111,764	111,764	97,390	48,684	48,706	176,982	91,918	85,064	53,496	26,788	26,708
		산림시설 등	109,432	63,454	45,978	15,803	9,897	5,906	34,477	10,821	23,656	12,024	8,111	3,913	16,848	13,387	3,461
		응원헬기 비용	2,319	1,160	1,160	-	-	-	-	-	-	-	-	-	-	-	-
	행안부	지방도·군도	18,532	9,198	9,334	4,534	2,267	2,267	3,292	1,646	1,646	4,527	2,220	2,307	532	266	266
		건축물철거비	29,148	29,148	-	1,769	1,769	-	14,972	14,972	-	3,962	3,962	-	619	619	-
		임시조립주택	131,824	65,912	65,912	10,604	5,302	5,302	44,000	22,000	22,000	28,600	14,300	14,300	4,620	2,310	2,310
		마을기반조성	28,496	-	28,496	5,041	-	5,041	13,355	-	13,355	3,600	-	3,600	-	-	-
		공공건물 등	4,877	2,473	2,404	148	148	-	593	309	284	2,068	999	1,069	160	72	88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5,924	2,962	2,962	-	-	-	102	51	51	2,138	1,069	1,069	-	-	-
		폐기물처리비	141,959	141,959	-	11,509	11,509	-	46,239	46,239	-	38,543	38,543	-	3,531	3,531	-
		상수도 등	38,309	23,941	14,368	6,657	3,324	3,333	8,371	6,529	1,842	12,564	8,784	3,780	116	35	8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49,084	34,731	14,353	24,920	21,900	3,020	17,669	8,769	8,900	6,422	4,062	2,360	-	-	-
	국방부 군사시설		1,241	1,241	-	50	50	-	27	27	-	271	271	-	160	160	-
	국토부 국도		7,751	7,751	-	-	-	-	314	314	-	777	777	-	211	211	-
	농식품부 수리시설 등		6,300	2,696	3,604	1,075	408	667	1,115	281	834	3,437	1,706	1,731	627	301	326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등		45,377	33,361	12,016	33,833	27,532	6,301	1,606	921	685	1,406	642	764	-	-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등		10,612	1,890	8,722	580	-	580	8,410	1,240	7,170	1,300	650	650	-	-	-
	산업부 에너지시설 등		784	366	418	-	-	-	-	-	-	200	100	100	-	-	-
	해수부 해양시설 등		570	285	285	-	-	-	-	-	-	-	-	-	-	-	-